

2019년 도 문화재위원회

제7차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19. 7. 24.(수), 14:00 ~ 16:2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 출석의원 : 백인성, 기근도, 박종민, 백운기,
신정일, 이유미, 이정모, 정명섭,
정부희, 최종희

(이상 10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장성 백양사 비자나무 숲」 등 내 트레킹길 조성(*설명)	(공개)
2	「화성 고정리 공룡알화석 산지」 내 시추조사(신안산선 건설)(*설명)	(공개)
3	「포천 화적연」·「포천 한탄강 명우리 협곡」 내외 탐방로(포천 주상절리길) 조성(*설명)	(공개)
4	「제천 의림지와 제림」 내외 인도교 재설치(*설명)	(공개)
5	「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공개)
6	「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주변 축사신축	(공개)
7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 산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공개)
8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공개)
9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및 「제주 서귀포 산방산」 주변 전기카트장 조성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개)
10	「제주 서귀포 산방산」 주변 종교시설 신축	(공개)
11	「문경 토끼비리」 주변 휴게음식점 신축	(공개)

【검토사항】

12	「정선 무릉리 튜파」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지정 검토(*설명)	(공개)
13	「정선 봉양리 쥐라기역암」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지정 검토(*설명)	(공개)
14	「정선 화암약수」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지정 검토(*설명)	(공개)
15	「정선 화암동굴」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지정 검토(*설명)	(공개)
16	「정선 구미정사와 골지천」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검토(*설명)	(공개)

【보고사항】

17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74건)	(공개)
----	-----------------------------	------

【심의사항】

안전번호 천기 2019-07-01

1. 「장성 백양사 비자나무 숲」 등 내 트레킹길 조성

가. 제안사항

「장성 백양사 비자나무 숲」 및 「장성 백양사 백학봉」 내 트레킹길 조성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장성 백양사 비자나무 숲」 및 「장성 백양사 백학봉」 내 트레킹길 조성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153호 「장성 백양사 비자나무 숲」 (1962.12.7.)
명승 제38호 「장성 백양사 백학봉」 (2008.2.5.)
 - 소재지 :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산115-1번지 일원
 - 지정일 : 1962.12.7.
- (3) 신청내용
 - 사업명 : 비자나무 숲 트레킹길 조성
 - 사업위치 :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산115-1번지 일원
 - 사업내용 : 트레킹길 조성
 - 트레킹길(데크시설) : L=112m(토사구간 90m, 암구간 22m), 폭1.5m
 - 데크난간 H1.2m, 아연각관(100*100*2.3t) 항타식 및 암반식 기초 등
 - 급경사구간(50~75°경사)으로 전구간 데크설치
 - 지장목제거 : 대나무(직경4.1~6cm이하) 840본, 단풍나무(직경10cm이하) 4본
층층나무(직경28cm) 1본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9.12.31.까지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

라. 검토의견 (*****)

- 신청사업은 문화재구역 내 트레킹길을 조성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2017년 1차 사업완료 후 연차적으로 백학봉(약사암)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이로 인해

자연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마. 참고자료 (서면검토·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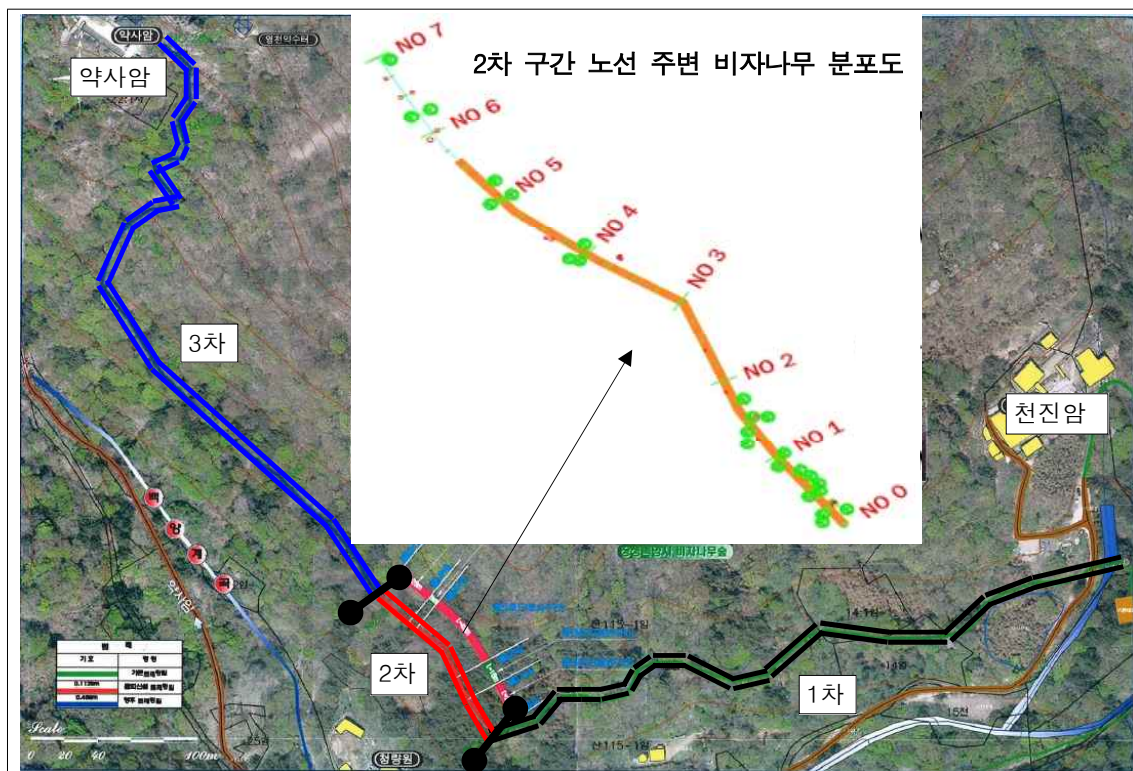
(**** ***** 의견 / 2019.7.10.)

- 사업부지는 천연기념물인 장성 백양사 비자나무 숲과 명승인 장성 백양사 백학봉이 위치한 지역임.
- 금번 트레킹길 조성사업은 방문객에게 우수한 자연유산인 비자나무 숲 및 장성 백양사 백학봉을 적극적으로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연유산 문화재의 관람 및 교육에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 ***** 의견 / 2019.7.10.)

- 2017년 백양사 쌍계루에서 천진암 일부구간(420m)을 개통하였고 추가로 약사암까지 구간을 완성시켜 방문객이 쾌적하게 산행을 즐길 수 있도록 전체 구간 완성이 필요함.

[참고] 장성 백양사 비자나무 숲 내 트레킹길 전체구간(1차~3차)



- * 1차 트레킹길 조성(허가일 2017.6.28. / 허가기간 2017.6.28.~2018.6.27.)
 - 허가내용 : 트레킹길 L=426m, 폭1.5m(야자매트 255m, 데크 92m, 목교 3개소, 잡석포설 45㎡, 수목벌채(단풍나무 외 4종 13주) 등
- * 2차 트레킹길 조성(금번신청) : 트레킹길 L=112m, 폭1.5m (데크100%)
- * 3차 트레킹길 설치예정(2020년) : 명승 제38호 장성 백양사 백학봉 내 약사암까지

바. 의결사항

- 부결
 - 비자나무숲 보존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부결 10명

2. 「화성 고정리 공룡알화석 산지」 내 시추조사

가. 제안사항

「화성 고정리 공룡알화석 산지」 내 시추조사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화성 고정리 공룡알화석 산지」 내 시추조사를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414호 「화성 고정리 공룡알화석 산지」
 -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산5번지 등
 - 지 정 일 : 2000.3.21.
- (3) 신청내용
 - 사 업 명 : 시추조사
 - 사업위치 : 문화재지정구역 북측 시화호 간석지 부근(육상부 2곳, 해상부 1곳)
 - 사업내용 : 시추공 3공
 - 굴착깊이 : 40m, 굴착지름 : 76mm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9.12.31.까지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

라. 검토의견 (*****)

- 신청 사업은 「화성 고정리 공룡알화석산지」 문화재구역 내 시추조사 건으로, 동 사업으로 인하여 자연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서면검토·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9.7.18.)

- 고정리 공룡알화석 산지는 발달규모 면에서 국내의 공룡알화석산지 중 가장 큰 규모이며, 공룡알 산출 층준 또한 동일 지역에서 확인된 것으로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지역으로, 백악기 당시 한반도에 발달하였던 아건조기후

환경에서의 충적선상지 및 망상하천의 발달기록을 입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지역임.

- 이와 함께 공룡알 화석산지가 넓은 갯벌지역에 노출되어 있어 매우 독특한 자연성을 가지고 있음. 계획 노선이 문화재구역을 통과하는 지역의 지표는 갯벌과 식생, 수로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지표에서의 공룡알화석층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이 이루어지지 않는으나, 계획노선 지하에 이 지역의 공룡알 화석층인 백악기 시화층의 퇴적암이 분포할 경우 이 사업으로 인해 매장 문화재의 훼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획 노선 지하 암반의 지질 특성이 확인될 필요성이 있음.
- 암반 지질 특성 확인의 경우 지하 25m 깊이의 굴착이 이루어지는 교각 설치부와 백악기 퇴적암 암반의 분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서측)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제시된 3개 지점의 시추 위치 중 CBB1을 CBB7 북서측의 P11 교량 설치 지점으로 교체하는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9.7.17.)**

- 제시된 3개 시추공을 통해 공룡알화석 산지와 동일한 퇴적암층의 존재 유무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시추 후 시추자료와 시추주상도의 전문가 확인이 필요함.
- 시추조사를 통한 공사구역 하부 지질구조에서 백악기 퇴적암이 존재할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문화재전문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9.7.17.)**

- 신안산선 복선전철 노선으로 예정된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교량구간에 대하여 기반암이 선캄브리아시대 편마암인지 공룡알을 배태하고 있는 남양분지의 백악기 퇴적암인지 확인이 필요함.
- 시추공의 수는 적절하다고 판단됨.
- 시추공 확인을 통해 단층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판단 가능함.
- 교량건설 허가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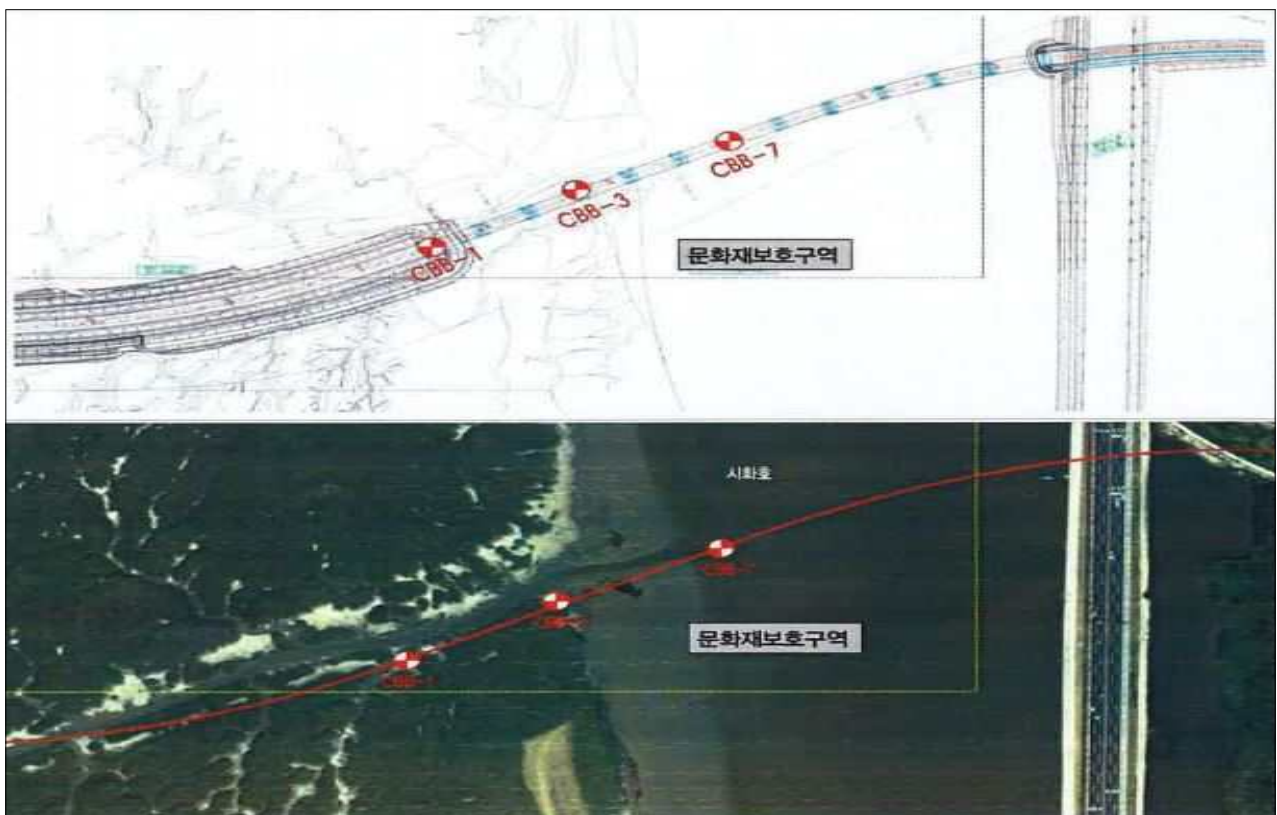
(* 의견 / 2018.7.16.)**

- 신청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 퇴적암 분포 확인을 위한 시추 조사하려는 사항으로 관련 소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임.

□ 위치도



□ 조사위치



바.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교량설치 예정지 중 해역부분(P10)지점에 시추조사를 추가하여 실시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조건부 가결 10명

3. 「포천 화적연」·「포천 한탄강 명우리 협곡」 내외 탐방로(포천 주상절리길) 조성

가. 제안사항

「포천 화적연」·「포천 한탄강 명우리 협곡」 내외 탐방로 조성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포천 화적연」·「포천 한탄강 명우리 협곡」 내외 탐방로 조성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2) 대상문화재
 - 명승 제93호 「포천 화적연」 (지정일 2013.1.4.)
 - 소 재 지 :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자일리 산115번지
 - 명승 제94호 「포천 한탄강 명우리 협곡」 (지정일 2013.2.6.)
 - 소 재 지 :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697-3번지
- (3) 신청내용
 - 사 업 명 :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 사업위치 : 포천시 영북면 자일리 1020-1번지 ~ 소회산리 산3-10번지
 - 사업내용

구분	총계	문화재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구역		
			1구역(기준규모)	2구역(2층높이)	3구역(관련법)
면적	13,573m ²	2,826m ²	5,393m ²	1,108m ²	4,246m ²
길이	5.4km	1.1km	2.2km	0.4km	1.7km
폭	1.5~2m	1.5~2m	1.5~2m	1.5~2m	1.5~2m
시설	노면다짐·야자매트 목교 4개소 테크로드 200m 안내판 8개	노면다짐·야자매트 목교 2개소 (2m×13~20m) 안내판 3개	노면다짐·야자매트 목교 1개소 (2m×15m) 안내판 2개	노면다짐·야자매트 목교 1개소 (2m×7m) 안내판 1개	노면다짐·야자매트 테크로드 200m 안내판 2개

* 사업내용 중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외 사업은 제외(2.2km, 보도교 등)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20.12.31.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외

* 허용기준 1구역 : 기존 건축물(시설물) 범위 내 개축·재축 허용

* 허용기준 2구역 : (평지붕)건물 최고높이 8m 이하(2층 이하)

(경사지붕)건물 최고높이 12m 이하(2층 이하)

* 허용기준 3구역 : 포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라. 검토의견 (*****)

- 신청 사업은 문화재구역 내외에 목교를 포함한 탐방로를 조성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동 사업으로 인하여 자연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마. 참고자료 (서면검토·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9.7.18.)

- 소목교는 한탄강 본류에서는 보이지 않았고, 길보다 낮게 설치하므로 멍우리 협곡과 화적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
- 임진강의 한 지류인 한탄강은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독특한 강으로 한국의 그랜드캐니언으로 불리고 있으며, 연천과 포천, 그리고 철원에 걸쳐 있는 강임.
- 특히 화적연은 검재 정선의 한탄강 그림 중 삼부연 폭포, 정자연 등의 그림과 조선 중기의 문장가인 김창협이 시를 쓰기도 했던 명소 중의 명소로 제대로 조성된다면 우리의 문화재를 가까이서 체험하고 조망하는 활용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함.

(*** 문화재전문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9.7.18.)

- 신청대상지는 포천 화적연과 멍우리협곡 문화재구역(2,826㎡)을 포함, 현상 변경허용기준 1(기존건물 개축·재축)·2(건물높이 8~12m)·3(포천시 도시계획 조례적용)구역으로 한탄강을 조망하면서 둘러볼 수 있는 주상절리길(둘레길) 조성을 계획하고 있음.
- 기존 둘레길(약 23km)과 연결되는 주상절리길(약7.6km)은 대부분(약 95%) 원지반을 다진 후 야자매트를 설치하고, 지형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테크로드(약 5%)와 보도교(2개소), 소목교(5개소)를 설치하는 것임.
 - 문화재구역 내의 소목교(2개소)는 한탄강 지류에 설치, 본류에서 조망되지

않는 등 1구역(1개소), 2·3구역(2개소)의 소목교도 한탄강 본류의 주요 조망점에서 조망되지 않음.

- 보도교(2개소)와 데크로드(200m)는 문화재경계에서 500m 밖에 위치하고 3구역에 데크로드(2개소) 등도 주요조망점에서 조망되지 않음.
-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은 우리의 문화재를 가까이서 체험하고 알리는 활용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며, 동 사업으로 문화재와 그 주변 역사문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보도교 등 시설물 설치를 위한 하부 콘크리트구조물(교대, 날개벽 등)의 외관을 주변 경관과 어울리게 자연석으로 돌붙임하는 방안으로 조정하는 등 홍수로부터 안전과 사전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함.

(* 의견 / 2019.6.28.)**

- 신청지는 명우리 협곡 중류부터 철원지역 경계까지이며, 두 문화재의 현상 변경허용기준 상 문화재구역, 1, 2, 3구역을 포함하고 있음.
- 한탄강의 홍수터 부지를 활용하고 국가지정문화재 지역(명승)의 가치와 경관을 관람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도보길을 만드는 사업으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바.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야자매트 설치 최소화를 위해 실시설계 시 관계 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조건부 가결 10명

4. 「제천 의림지와 제림」 내외 인도교 재설치

가. 제안사항

「제천 의림지와 제림」 내외 인도교 재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천 의림지와 제림」 내외 인도교 재설치를 위해 신청한 사항으로 2019년 제5차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심의('19.5.21.)에서 '문화재의 역사적 배경과 원형복원에 대한 검토 및 인도교 설계와 형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의 사유로 부결된 사항을 일부 내용 보완하여 재신청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명승 제20호 「제천 의림지와 제림」
 - 소재지 : 충청북도 제천시 모산동 241번지
 - 지정일 : 2006.12.4.
- (3) 신청내용
 - 사업명 : 인도교 재설치(유리전망다리 및 주변정비)
 - 사업위치 : 충청북도 제천시 모산동 581번지
 - 사업내용 : 기존 인도교 철거 및 신설

구분	기존 인도교	1차 신청/부결 (2019.5.21.)	금회 신청 (2019.7.4.)		
			1안	2안	3안
형태	직선	원형	원형	삼각형 (지지대식)	반원형 (사장교식)
규모	폭3.6m, 길이 19m	폭2.4m, 길이 80.4m	폭2.4m, 길이 80.4m	폭2.4m, 길이 64m	폭2.4m, 길이 64m
구조/ 외장	철근콘크리트, 목재외장	AR 강관 거더, 유리·목재 데크, 강화유리(33mm)			
안전	안전진단 D등급(불량)	보도 활하중: 3.5KN/m ² , 풍하중: 5.4KN/m ² (=550kg/m ²)			
기타	1989년 준공	단일안의 디자인	경관검토 실시 및 디자인 검토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20.12.31.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외

* 허용기준 1구역 : 개별심의

라. 검토의견 (*****)

- 신청 사업은 문화재구역 내외에 걸쳐있는 노후 인도교를 철거하고 순환 형태의 인도교로 대체·설치하는 사항으로, 자연문화재 보존과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마. 참고자료 (서면검토·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9.7.15.)

- 신청 인도교는 여수하천의 교각으로 의림지의 제방은 아니지만 당초 안으로 설치될 경우 북쪽 반원형은 의림지의 고유한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남쪽으로만 전망데크를 설치하고 주된 보행로는 기존의 인도교를 이용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국내외의 폭포전망대(교)의 사례를 조사하여 참고할 것.

(*** 문화재전문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9.7.15.)

- 기존 교각의 안전문제로 재건립되는 것으로, 현재의 가치와 필요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신규 교각을 디자인하려는 의도는 긍정적이라 사료됨.
 - ‘삼한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의림지 건립시점을 고려할 때, 교각의 ‘전통적’ 형태와 양식이 모호하고 고증할 수 있는 자료가 미미하며, 이러한 제한적인 상황을 볼 때, 교각에 보다 신선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요소를 도입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됨.
- 제천시가 제안한 ‘원형’디자인은 특히 폭포 쪽 바닥을 유리로 설치하고 직선로를 폭포가 더 많이 보이는 방향으로 휘어지는 곡선처리를 하여 시각적 경험을 극대화하려는 의도 자체는 매우 창의적이라고 여겨지며 독창성과 균형미 등의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
 - 이러한 창의성과 장점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공포감을 느끼거나 교각을 돌아서 건너고 싶지 않은 보행자들의 불편이나 민원에 대해서도 신중히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디자인을 단일안 보다는 2-3개의 추가적인 안으로 비교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가령, 반원형 같은 경우 ‘원형’디자인이 야기할 수 있는 민원을 차단할 수 있고 보다 심플한 형태가 될 가능성도 있음.

(*** 의견 / 2019.7.16.)

- 본 사업은 명승 제20호 제천 의림지 및 제림 보호구역내 용추폭포 인도교 개선공사로 여수토 상부의 기존 콘크리트 인도교를 철거하고 원형의 유리 전망 다리(지름 24.0m, 폭 2.4m)로 개선하는 사업임.
- 1989년 수문공사 시 근대식 라바댐 및 콘크리트 인도교(길이 19m, 폭 3.7m)를 설치하였으며, 2005년 콘크리트 난간을 목재 난간으로 교체하고 슬라브 바닥 및 벽체 등 외관을 데크 시설물로 보완 설치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음.
- 2019년 본 교량의 정밀 점검 결과 구조적 결함이 확인되어 보행자의 안전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으로 교량의 재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임.
- 이에 본 사업을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원형의 유리 전망 다리 설치에 원형에 가깝다 할 수 있는 의림지와 어떠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명승으로서의 주변 환경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2019년 제5차 위원회에 제출된 검토의견>

(*** 의견 / 2019.5.9.)

- 구조물 유리발판에서 하부 강관구조물을 내려 볼 때 하부구조물의 색상 등 주변시설물(경관옹벽)과 경관조화가 필요.
- 구조검토서는 적정으로 기술되어 있음. 다만, 평면상 원형구조물이므로 좌우 균형 유지가 필요. 특히, 하부기초의 폭을 넓혀 모멘트를 줄일 필요가 있음.
- 하부기초설계에서 인발하중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반영 요망.
- 설계활하중(균집하중)은 비교적 양호하게 적용되었으나 안전을 위하여 다소 보수적으로 적용 검토.

(*** 의견/ 2019.5.3.)

- 본 사업은 기존 인도교의 노후화에 따른 보행자의 안전 문제 해소 및 명승과 조화를 이루도록 전통의 원형 형태로 인도교를 재가설하는 상황으로 문화재의 보존 및 가치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명승 지정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제천 의림지와 제림’의 문화재와 조화를 이루며, 기존 콘크리트 인도교 정밀안전 진단결과 D등급 교량으로 판정되어 보행자 안전문제 해소 및 제천시의 대표적인 문화재인 명승 제20호 의림지와 제림의 위상을 높이며 방문객에게 사계절용추폭포의 자연미를 감상할 수 있는 공간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 본 사업은 문화재 지정구역과 보호구역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으로 기존 노후 시설물을 새롭게 정비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문화재 보존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바.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인도교 디자인 및 규모 등에 대해 문화재위원의 자문 및 최종 검토 후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 시행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조건부 가결 10명

5. 「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조정

가. 제안사항

천연기념물 제420호 「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420호 「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1번지 외
 - 지 정 일 : 2000.7.18.
- (3) 신청내용 : 「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신청
 - (현행) 경사지붕(3:10이상) → (개정) 경사지붕(10:3이상)
 - 1구역~5구역 및 공통사항 : 변경 없음

라. 검토의견 (*****)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지침」 규정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변경이 필요하며, 허용기준 작성지침 공통
사항에 따라 경사지붕 기준 추가보완이 필요함.

문화재청 훈령 제449호(2017.12.18.)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지침」
제4장 허용기준 작성

제17조(일반사항) ③허용기준에 적용되는 건축물 등의 높이 및 형태는 다음과 같다.

4. ‘경사지붕’은 양쪽 경사이면서 경사율이 10:3이상인 지붕형태를 말한다.

제19조(공통사항) ②허용기준 공통사항은 별표3과 같다.

[별표 3] 허용기준 공통사항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검토안>

구분	허용기준 검토(안)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12m 이하	○ 건축물 16m 이하
3구역	○ 건축물 16m 이하	○ 건축물 20m 이하
4구역	○ 건축물 20m 이하	○ 건축물 24m 이하
5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1구역부터 4구역에 적용》 ○ 기존 건축물은 기존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추가)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고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심의함	
	《1구역부터 5구역에 적용》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협의함	

마. 참고자료 (서면검토·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의견 / 2019.7.2.)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 개정 고시를 통해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지침과의 차이점 보완 및 민원을 미연에 차단하고, 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데 있음.

바.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문화재청 조정안대로 시행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조건부 가결 10명

6.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주변 축사신축

가. 제안사항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주변 축사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주변 축사신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250호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김포시 일원
 - 지 정 일 : 1975.2.25.
- (3) 신청내용
 - 사 업 명 : 축사신축
 - 사업위치 :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시암리 97-3번지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사업면적	3,243㎡	
건축면적/연면적	1,386㎡/1,386㎡ (축사 1동 396㎡, 퇴비사 198㎡)	축사 3동, 퇴비사 1동
구조/지붕형태	경량철골구조/경사지붕	
건축물 최고높이/층수	8m/1층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20.5.31.까지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283m이격(5구역)

* 허용기준 5구역 :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라. 검토의견 (***)**

- 신청사업은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283m 이격된 구역에 축사를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동 사업으로 인하여 자연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마. 참고자료 (서면검토·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9.7.4.)**

- 본 사업은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로 지정된 지역인근에 동·식물 관련시설(축사) 신축사업으로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83m 이격되어 있으며, 허용기준 5구역에 걸쳐 있음.
- 본 사업으로 가축의 사육두수가 많고 가축의 분뇨 배출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의 주변 환경의 오염 등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전문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9.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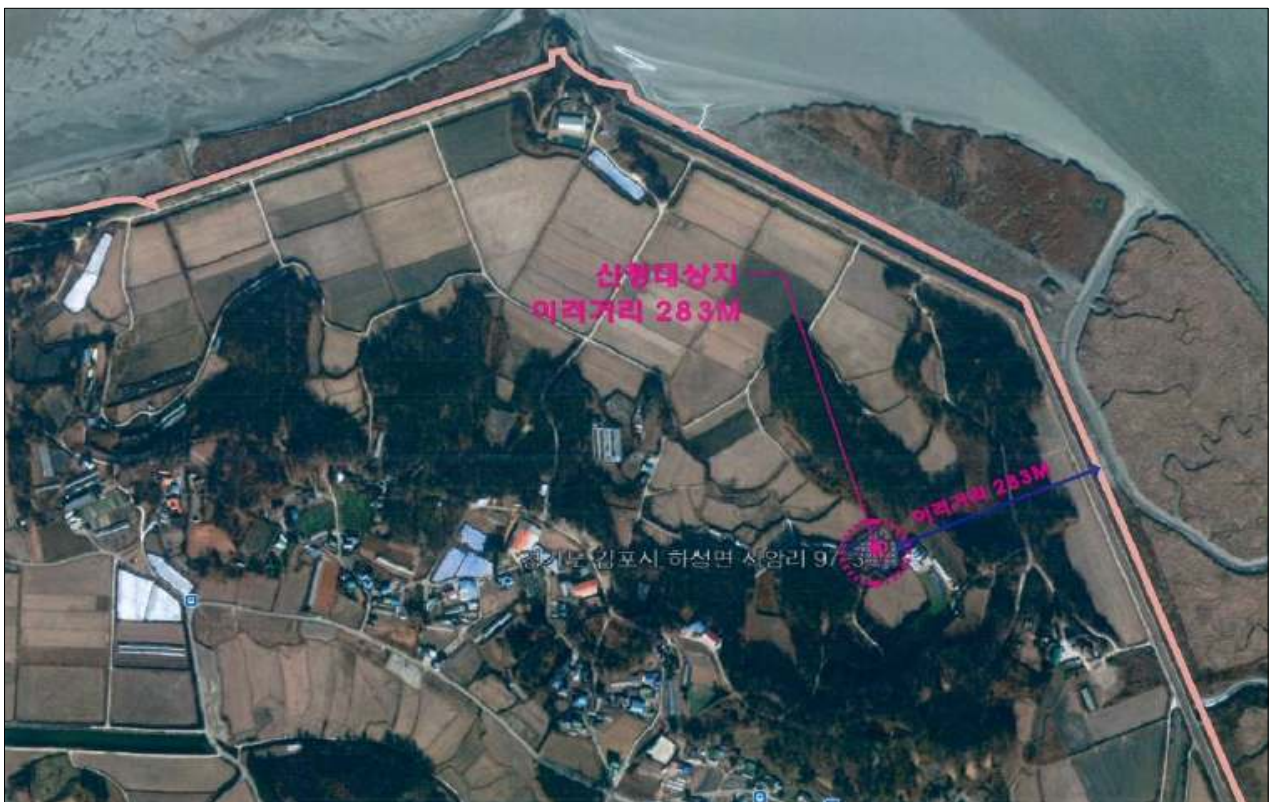
- 본 신청 건은 기존 농경지에 축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신청 건으로 1차 산업의 증진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됨.
- 그러나 본 사업대상지는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와 인접하여 있으며, 김포시에서 겨울철에 기러기류 및 재두루미 보호를 위한 먹이를 공급하는 지역과 약 3km 정도 떨어져 있어 공사로 인한 다양한 방해를 받을 것으로 예측됨.
- 또한 인근지역의 축사 신축 건을 불허하였으며, 현재 김포시 일대가 점차 증가하는 비닐하우스, 축사, 공장 등으로 재두루미의 먹이취식지가 축소되고 있는 시점에서 재두루미 및 기러기류의 월동기 동안 보호를 위해서 신축 축사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의견 / 2019.6.25.)**

- 본 건은 농경지로 사용중인 토지 상에 동·식물관련시설(축사)를 신축하여 한우를 사육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주변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5구역(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에 해당하나, 용도 상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사항임.
- 해당 문화재는 천연기념물 및 천연기념물의 도래지로 동·식물 관련시설의 신축 시 도래하는 천연기념물 개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현재까지 해당 지역 내 행위를 불허하였으며, 민원 발생 시에도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동·식물관련시설의 신축이 불가할 안내하여온 바, 문화재의 보호 및 형평성을 위하여 본 신청 건 역시 불허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됨.

- 현재 시암리 습지는 저어새가 매년 도래하는 지역으로, 신청지와 매우 인접하며 축사의 신축 시 각종 질병 및 악취 소음 등으로 인하여 문화재 보호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 또한 민가와 불과 200여m 이격하고 있어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음.

□ 사업예정지 위치도



바. 의결사항

- 부결
 - 재두루미 등 철새 서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부결 10명

7.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 산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천연기념물 제195호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 산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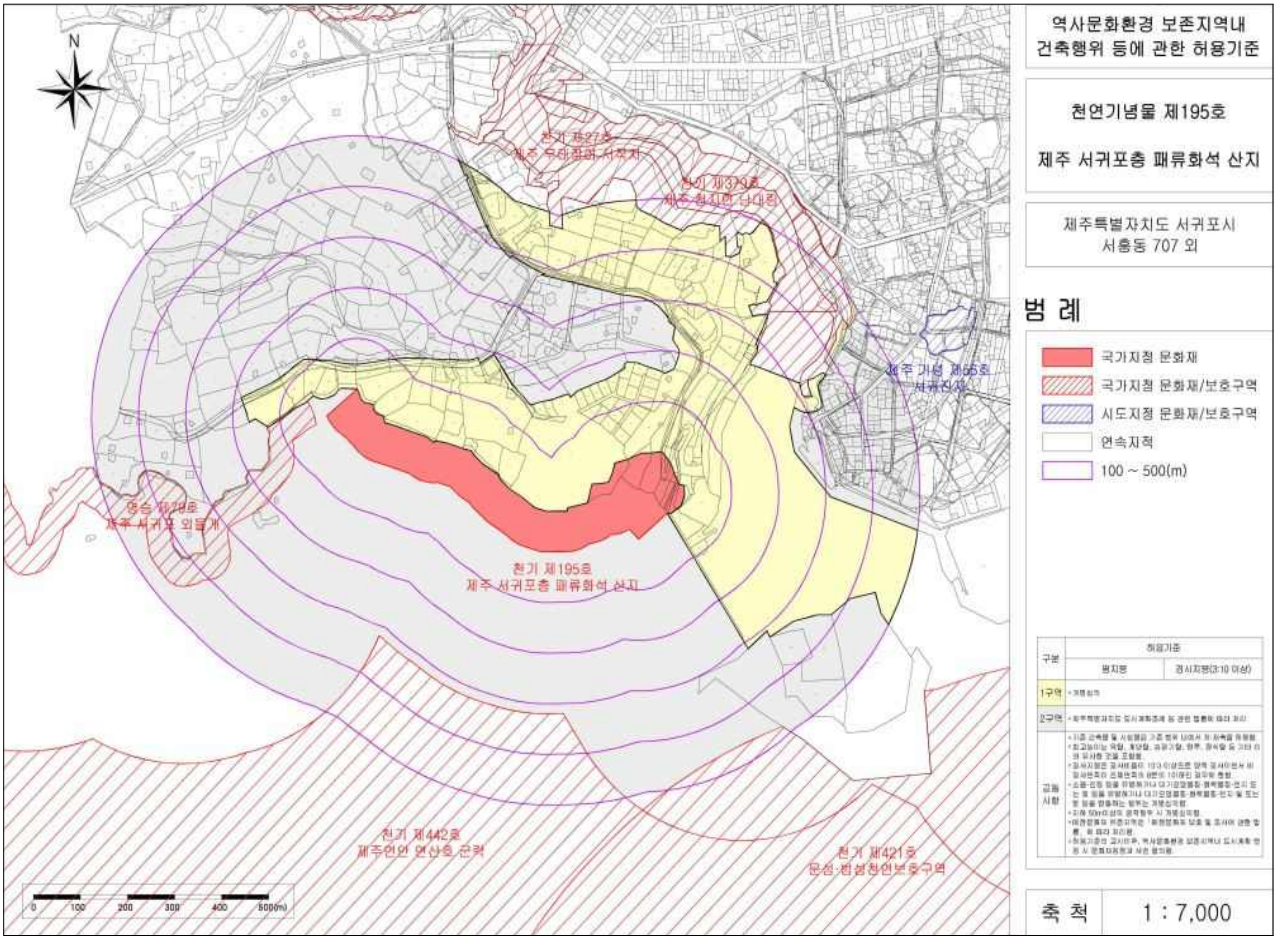
-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 산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9년 제6차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심의('19.6.26.)에서 '2구역(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에 굴착행위 등 규제사항 적용 여부 재검토 필요'의 사유로 보류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95호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 산지」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707번지 외
 - 지 정 일 : 1968.5.29.
- (3) 신청내용 :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 산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신청(안)

구 분	허용기준 조정 신청(안)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①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②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③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④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 함
- ⑤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 ⑥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⑦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라. 검토의견 (*****)
- 기 고시된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 산지 허용기준은 1구역으로 설정된 지역 (주변 국가지정문화재 허용기준과 중첩된 부분 있음) 외 500m 내 지역은 2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신청 안은 1구역을 개별심으로 바꾸고 지형도면 조정 없이 공통 사항을 수정하여 신청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 신청안대로 기 허용기준을 유지하되 일부 공통사항은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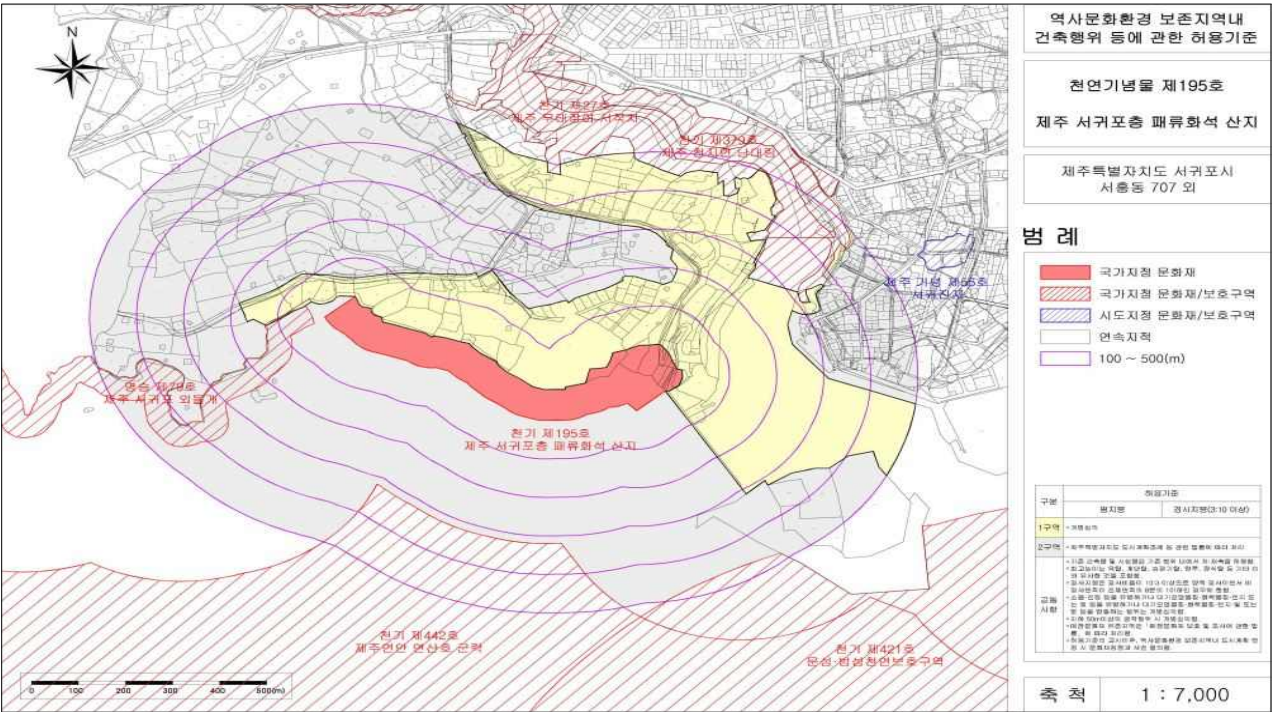
<당초 검토안>

구 분	허용기준 조정 신청(안)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①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②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③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④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⑤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 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구역별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⑥ 2구역의 경우 ④번, ⑤번 공통사항만을 적용함.		

<금회 검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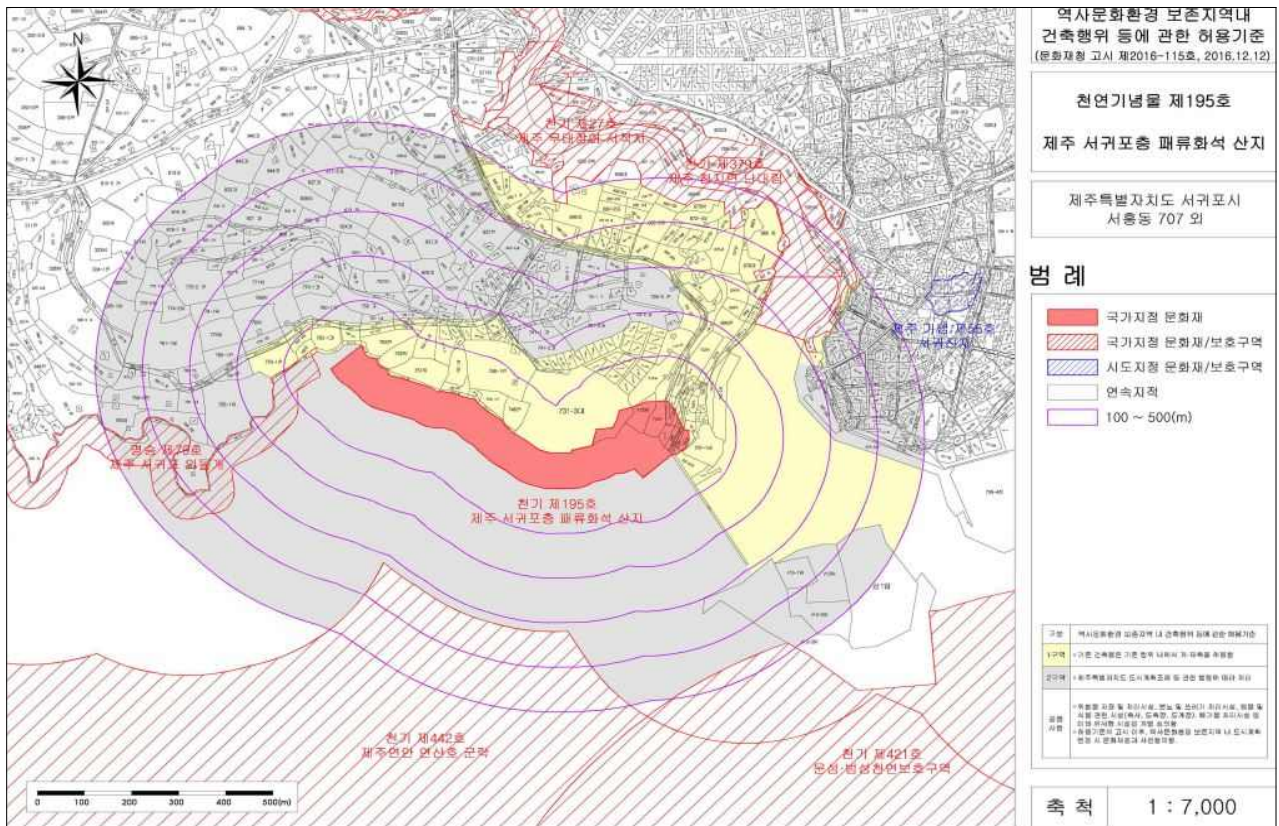
구 분	허용기준 조정 신청(안)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①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② 지하 25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 함 ③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④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 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구역별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	--



마. 허용기준 기 고시 현황 (2016.12.12. 고시)

구 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비 고
1구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2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함	



바. 참고자료 (서면검토·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금회 검토의견>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9.7.11.)

- 공통기준 중 굴착행위 규제에 경우, ‘25m 깊이 이상’을 개별심의 대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문화재청 검토안에 대한 의견 / 2019.7.16.)

- 문화재청 검토 안 수용함.

<2019년 제6차 위원회에 제출된 검토의견>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9.5.30.)

- 이 지역 배후 지역 지표의 10m 내외 깊이에 서귀포층의 퇴적층이 분포해 있음을 고려하여, 공통기준 중 굴착행위 규제에 경우, ‘5m 깊이 이상’을 개별심의 대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문화재전문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9.5.30.)

- 허용기준 조정(안)은 문화재청의 조정 (안)대로 함.
- 지형도면은 변경 없이 현행대로 함.

사.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문화재청 조정안대로 시행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조건부 가결 10명

8.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천연기념물 제438호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9년 제6차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심의('19.6.26.)에서 '3구역(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에 굴착행위 등 규제사항 적용 여부 재검토 필요'의 사유로 보류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438호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공유수면 외
 - 지 정 일 : 2004.4.9.
- (3) 신청내용 :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신청(안)

구 분	허용기준 조정 신청(안)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 터파기 시 홍조단괴 분포조사를 시행		
3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①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②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③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④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⑤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 함 ⑥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⑦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⑧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

라. 검토의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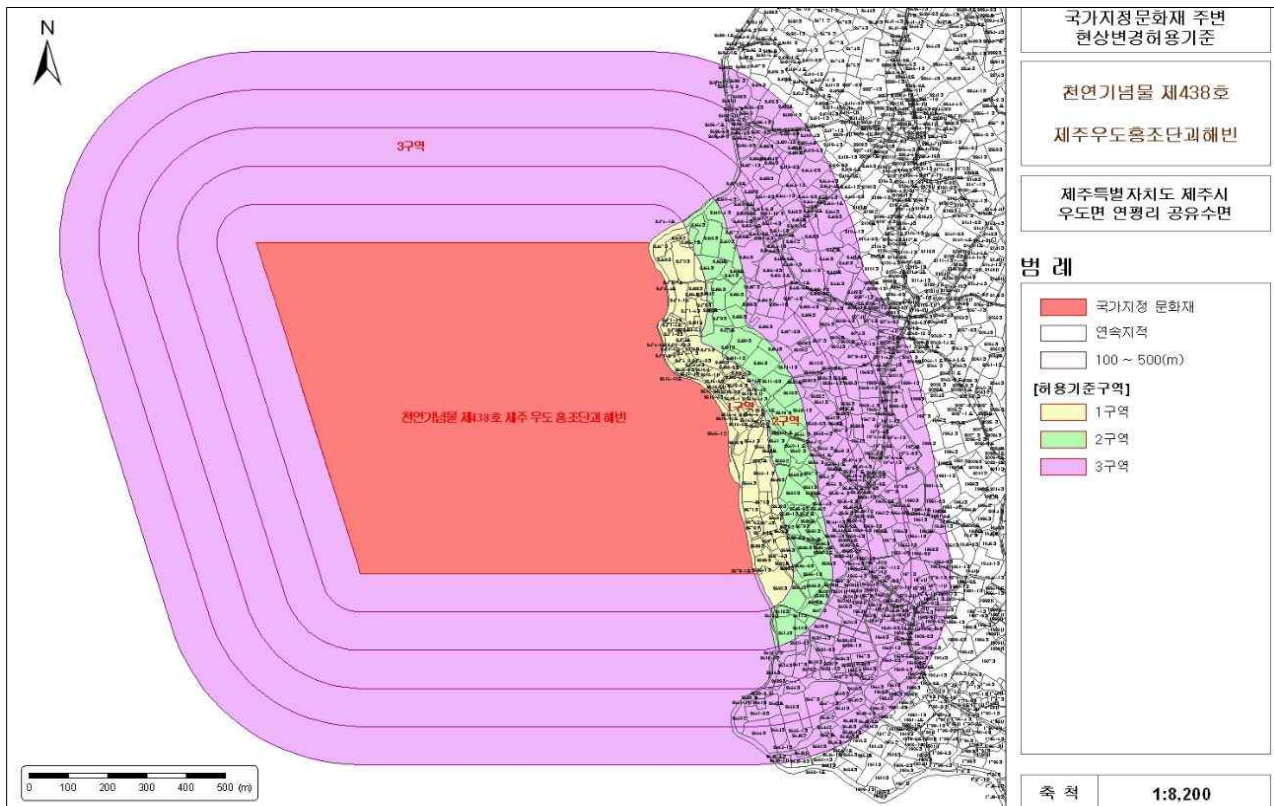
- 제주특별자치도 신청 안은 1구역을 해안선 반경 50m 지역으로 변경하여 개별심의로 바꾸고 그 외 100m 이내 구역을 2구역으로, 100m~500m 내는 3구역으로 설정하고 공통사항을 수정함.
- 기존 2구역 이내 문화재구역으로 부터의 거리가 100~200m에서 50~100m로 축소되어 신축 건축물의 증가 요인이 홍조단괴 해빈에 미치는 영향(해빈의 자연침식의 가속화, 홍조단괴 해빈 배후지 축소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당초 검토안>

구 분	허용기준 조정 신청(안)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 터파기 시 홍조단괴 분포조사를 시행		
3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①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②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③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④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수질오염(물환경보전법), 토양오염(토양환경보전법), 위험물제조·저장·처리시설(위험물 안전관리법), 분뇨처리 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동물 관련시설[축사(견사 포함), 도축장(개 포함), 도계장 등 도살 시설]과 화학물질·열·빛을 발생하는 시설 등은 개별 심의함. ⑤ 지하 2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심의함. ⑥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공공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⑦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 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구역별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⑧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⑨ 3구역의 경우 ⑦번,⑧번 공통사항만을 적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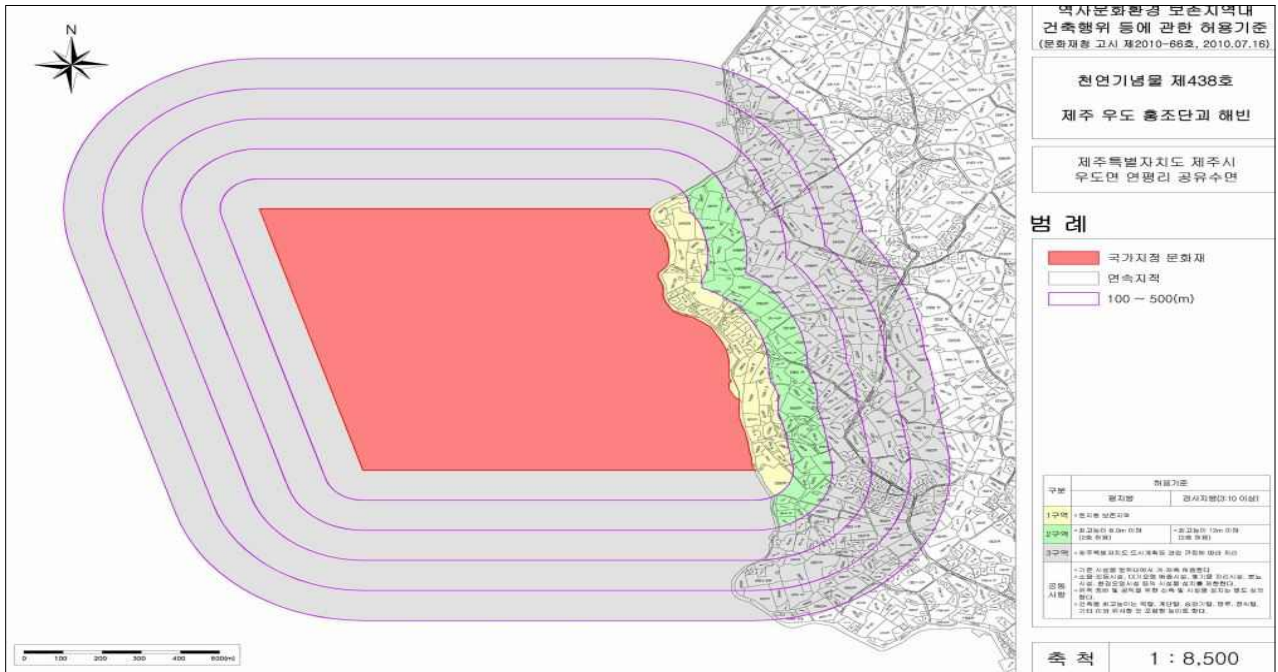
<금회 검토안>

구 분	허용기준 조정 신청(안)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터파기 시 홍조단과 분포조사를 시행	○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①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②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③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④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수질오염(물환경보전법), 토양오염(토양환경보전법), 위험물제조·저장·처리시설(위험물 안전관리법),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동물 관련시설[축사(견사 포함), 도축장(개 포함), 도계장 등 도살 시설]과 화학물질·열·빛을 발생하는 시설 등은 개별 심의함 ⑤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공공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⑥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 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구역별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⑦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⑧ 3구역의 경우 ⑥번,⑦번 공통사항만을 적용함		



마. 허용기준 기 고시 현황 (2010.7.16. 고시)

구 분	허용기준 조정 신청(안)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 원지형 보존지역		
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2층 허용)	○ 최고높이 12m 이하 (2층 허용)	
3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기존 시설물 범위내에서 개·재축 허용한다 ○ 소음·진동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분뇨시설, 환경오염시설 등의 시설물 설치를 제한한다. ○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바. 참고자료 (서면검토·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금회 검토의견>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9.7.11.)

- 공통기준 중 굴착행위 규제는 ‘2m 깊이 이상’을 개별 심의 대상으로 조정하는 것을 2구역 내 터파기 시 홍조단과 분포조사를 시행함(신청원안)으로 재조정.

(***** 문화재청 검토안에 대한 의견 / 2019.7.16.)

- 청 검토안 수용함.
- 문화재위원회의 현지 조사 결과 현재 고시된 지형도면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있어 수용함.

<2019년 제6차 위원회에 제출된 검토의견>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9.5.30.)

- 현재 허용 기준 1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은 홍조단과 해변 배후의 후안지역 연장부에 해당하는 공간으로 홍조단과편들이 넓게 매장되어 있는 지역임.
- 이러한 측면에서, 이 지역 홍조단과 퇴적물의 보호와 퇴적지형의 원형 보존을 위해 이 지역에서의 건물 신축 등의 현상변경 행위를 보수적으로 규제해 왔으며, 이상적으로는 1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철거를 통한 홍조단과 해변 배후 지역의 원지형 복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현행 1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게 되는 1구역의 축소는 홍조단과 해변의 자연유산적 가치 유지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한편 공통사항 중 굴착행위 규제에 경우, 이 지역 홍조단괴편의 분포특성을 고려할 때, '2m 깊이 이상'을 개별 심의 대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문화재전문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9.5.30.)**

- 허용기준 조정(안)은 문화재청의 조정(안)대로 함.
- 지형도면 조정(안)은 구역별 거리를 조정하지 말고 현행대로 함.

사.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문화재청 조정안대로 시행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조건부 가결 10명

9.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및 「제주 서귀포 산방산」 주변 전기카트장 조성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및 「제주 서귀포 산방산」 주변 전기카트장 조성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및 「제주 서귀포 산방산」 주변 전기카트장 조성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으로 2018년 제10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2018.10.24.)에서 ‘용머리 해안과 산방산 주변의 경관적 가치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의 사유로 부결된 사항으로 일부 내용 보완하여 재신청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526호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명승 제77호 「제주 서귀포 산방산」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16-7번지 일원
- 지 정 일 : 2011.1.13. / 2011.6.30.

(3) 신청내용

- 사 업 명 : 전기카트장 조성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12번지, 112-5번지
- 사업내용 : 전기카트장 조성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신축

구 분		1차 신청/부결 (2018.10.24.)	금회 신청 (2019.7.24.)	비 고
면적		3,979m ²	좌동	
전기카트장 조성	포장	2,386m ²	1,200m ²	(감)1,186m ²
	조경	618.93m ²	1806.05m ²	(증)1,187.12m ²
근린생활	건축면적	154m ²	좌동	

구 분		1차 신청/부결 (2018.10.24.)	금회 신청 (2019.7.24.)	비 고
시설 신축	건물 위치	건물위치 남쪽 경계에서 10.34m 이격 배치	건물위치 남쪽 경계에서 22.85m 이격 배치	당초보다 북쪽으로 1251m 이동계획하여 매포소에서 산방산 조망을 확보
	최고높이	4.8m(지상1층)	4.5m(지상1층)	(감)0.3m
	터파기	최고 0.5m (오수관 매설→ 시 오수관 연결)	좌동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20.11.31.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3m 이격,
「제주 서귀포 산방산」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278m 이격(2,3구역)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2구역	○ 최고높이 8m(2층) 이하	○ 최고높이 11m(2층) 이하	
제3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참고사항	○ 제1구역의 최고높이는 건축(시설)물의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생활하수발생시설은 하수도법 적용 ○ 소음·진동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분뇨시설, 환경오염시설 등의 시설물 설치를 제한한다		

라. 검토의견 (*****)

- 신청 사업은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및 「제주 서귀포 산방산」 주변 2, 3구역에 전기카트장을 조성하고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건으로, 동 사업으로 인하여 자연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서면검토·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금회 보완자료에 대한 검토의견>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9.7.15.)

- 이 사업은 1차 불허된(2018.10) 내용(경관 가치 저해)에서, 일부 사업 계획 (건물 위치와 높이, 조경, 포장면적, 운영계획 등)을 변경하여 신청한 건으로,

당초 사업의 주요 내용(사업 목적,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구조, 건축물 용도 등)은 유지되어 있음.

- 따라서 비록 변경 내용에 경관적 가치 훼손에 대한 부분적인 저감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 주변의 산방산과 용머리해안의 연속된 경관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는 위험성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前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9.7.18.)**

- 신청하려고 한 시설은 2018년에 신청된 바 있으며, 주변의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 판단되어 그 시설의 신청이 불허된 지역임.
- 이 지역은 지질학적으로 가치가 높은 용머리해안과 명승으로 지정된 산방산의 사이에 위치하는 지역으로서 이 지역에 건설될 건물과 바닥에 설치될 시설은 용머리 해안으로 들어가는 입구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용머리 해안을 따라 나타나는 화산쇄설층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변경되어 신청된 설치 예정은 건물과 제반 시설들은 산방산을 바라보는 위치에 있어서 산방산의 경관적 가치를 훼손할 가치가 매우 높음.
- 이 지역은 앞으로 산방산과 용머리해안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으로 이 지역 내의 자연경관을 해치는 어떠한 시설의 설치도 바람직하지 않음.
- 제주도에서는 주변의 상가와 바이킹 등 자연경관을 저해할 수 있는 시설들을 하루속히 정비하고 현재 2구역과 3구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빠른 시일 내에 모두 1구역으로 변경하여 이 지역의 경관적 가치가 가지는 세계적인 자연유산적 가치를 복원해야 할 것임.

(*** 의견 / 2018.10.19.)**

- 해당 지역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과 명승 제주 서귀포 산방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허용기준상 2구역과 3구역에 위치하고 있음.
- 해당 신청행위가 문화재 경관 등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 관계전문가 검토의견에 따르면 용머리해안과 산방산 주변 특유의 자연경관 가치와 분위기 조성에 어울리지 않는 사업 내용의 신설·운영은 장기적으로 주변 자연경관 유지관리의 지속성 확보 측면에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며, 그 외의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문화재 지역의 이미지와 맞지 않고 유산의 품격과 경관을 저해하며 관람객 불편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는 부정적 검토 의견이 도출되었음.

- 따라서 해당 문화재를 관리하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전기카트장 시설 조성은 소음·진동·먼지 발생 등이 예상되는 인공시설물로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시설물로 판단됨. 또한 탐방객들의 이동통로와 연결하여 있어 향후 민원발생 우려가 있어 해당 위치에 시설을 허용하는데 있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2018년 제10차 위원회에 제출된 검토의견>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8.10.15.)

- 신청지는 지질학적으로 가치가 높은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과 명승으로 지정된 산방산의 사이에 위치하는 지역으로, 신축될 시설은 용머리해안으로 들어가는 입구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용머리해안을 따라 나타나는 화산쇄설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하지만 신축시설이 산방산을 바라보는 위치에 있어서 산방산의 경관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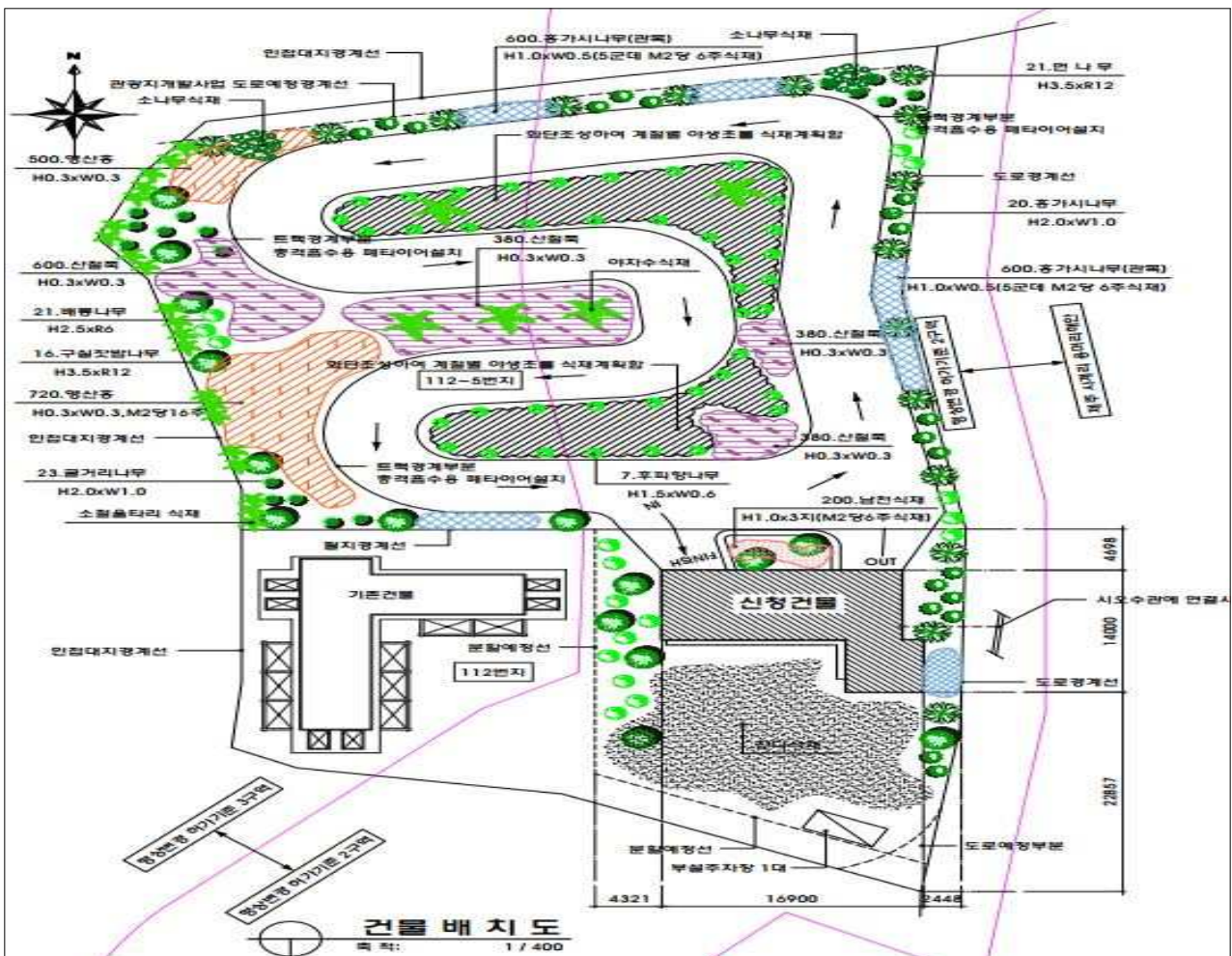
(***** 의견 / 2018.10.19.)

- 해당 지역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과 명승 제주 산방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허용기준상 2구역과 3구역에 위치하고 있음.
- 해당 신청행위가 문화재 경관 등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 관계전문가 검토의견에 따르면 용머리해안과 산방산 주변 특유의 자연경관 가치와 분위기 조성에 어울리지 않는 사업 내용의 신설·운영은 장기적으로 주변 자연경관 유지관리의 지속성 확보 측면에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며, 그 외의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문화재 지역의 이미지와 맞지 않고 유산의 품격과 경관을 저해하며 관람객 불편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는 부정적 검토 의견이 도출되었음.
- 따라서 해당 문화재를 관리하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전기카트장 시설 조성은 소음·진동·먼지 발생 등이 예상되는 인공시설물로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시설물로 판단됨. 또한 탐방객들의 이동통로와 연결하여 있어 향후 민원발생 우려가 있어 해당 위치에 시설을 허용하는데 있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위치도



□ 카트장 및 건물 배치도



바. 의결사항

- 부결
 - 용머리해안과 산방산 주변의 경관적 가치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부결 10명

10. 「제주 서귀포 산방산」 주변 종교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제주 서귀포 산방산」 주변 종교시설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주 서귀포 산방산」 주변 종교시설 신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명승 제77호 「제주 서귀포 산방산」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산16번지

○ 지 정 일 : 2011.6.30.

(3) 신청내용

○ 사 업 명 : 종교시설(종교집회장) 신축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461번지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대지면적	2,487㎡	
건축면적	274.14㎡ (A동 134.28㎡, B동 139.86㎡)	
연면적	481.59㎡ (A동 259.92㎡, B동 221.67㎡)	
구조/디자인	철근콘크리트, 백색스타코마감, 커튼월 외장	
건축물 최고높이/층수	지상2층 2동(최고높이 12.75m)	건축법에 의한 최고높이 11.95m
건물용도	종교집회장(용왕신)	
기타	주차 14대(최소5대), 오수처리는 관로 연결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20.9.30.까지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54m이격(1구역)
- * 허용기준 1구역 : 기존 건축물(시설물) 범위 내 개축·재축 허용

라. 검토의견 (*****)

- 신청 사업은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54m 이격된 1구역에 종교시설을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동 사업으로 인하여 자연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제주 서귀포 산방산 주변 현상변경 허가신청 결과 이력
 - 불허 : 사계리 450번지 소나무 200 여 그루 및 잡목 등 제거 (2017.7.4.)
 - 허가 : 사계리 183번지 외 *** 증축 (2017.10.29.)
 - 불허 : 사계리 495-1 외 근생, 숙박시설 (2017.9.29.)
 - 불허 : 사계리 15번지 단독주택 신축 (2018.4.2.)
 - 불허 : 사계리 487번지 농막컨테이너 설치 (2019.6.27.)

마. 참고자료 (서면검토·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의견 / 2019.7.3.)

- 제주 서귀포 산방산」 허용기준 1구역(지정구역과 약 54m 이격) 내 종교 집회시설 신축 사항으로 문화재의 영향을 고려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 부결
 - 명승경관 및 보존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부결 10명

11. 「문경 토끼비리」 주변 휴게음식점 신축

가. 제안사항

「문경 토끼비리」 주변 휴게음식점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경 토끼비리」 주변 휴게음식점 신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주)***

(2) 대상문화재 : 명승 제31호 「문경 토끼비리」

○ 소 재 지 :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산41번지

○ 지 정 일 : 2007.12.17.

(3) 신청내용

○ 사 업 명 : 휴게음식점 신축

○ 사업위치 :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103-3번지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대지면적	304m ²	
건축면적/연면적	64m ² / 64m ²	
구조	경량철골조	
외장	외장판넬(지붕·벽체), 칼라페인트·칼라유리 마감	
건축물 최고높이/층수	지상1층(최고높이 8.95m)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20.2.29.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39m이격(1구역)

* 허용기준 1구역 : 기존 건축물(시설물) 범위 내 개축·재축 허용

라. 검토의견 (***)**

- 신청 사업은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39m 이격된 1구역에 휴게음식점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동 사업으로 인하여 자연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마. 참고자료 (서면검토·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9.7.15.)**

- 위치는 진입부 시각선상에 있는 송림의 남쪽 하천 가장자리로 신청건물이 건립될 경우 진입 조망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건너편 국도 상에서 바라 보이는 파노라마 전경과 송림 속에서의 전망을 저해하므로 역사문화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전문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9.7.15.)**

- 신청 위치는 ‘토끼비리’의 진입로이자 하천변 진입로서 건축물이 건립되면 경관저해가 적지 않다고 사료됨.
- 토끼비리와 주변 방문객, 차량 등 외부의 시선에서는 대체로 아름다운 자연의 파노라마 경관을 경험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위치로 보임.
- 도보 5분 내에 큰 규모의 식음료 판매, 휴게시설, 소형 매점 등이 있어, ‘기능적’ 의미에서 이러한 공간들의 신규 설치가 시급하다고 판단되지 않음.

(* 의견 / 2019.7.22.)**

- 이곳은 경관이 아름다운 역사유적지인 관계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우리 지역의 명소로 특히 주말이면 평소보다 많은 관광객의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비록 신청된 건물의 높이가 8.95m로서 다소 높은 편이며 토끼비리(명승 제31호), 석현성, 고모산성 등의 유적지 진입로에 해당하는 지역이며 건축물의 높이와 재질을 주변 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재조정이 바람직함.

바. 의결사항

- 부결
 - 명승경관 및 보존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부결 10명

【검토사항】

안건번호 천기 2019-07-12

12. 「정선 무릉리 튜파」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정선 무릉리 튜파」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정선 무릉리 튜파」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가치 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신청내용

- 지정명칭 : 정선 무릉리 튜파(旌善 武陵里 튜파, Mureungri tufa, Jeongseon)
-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지질·광물·지형)
- 소재지 :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무릉리 산308번지
- 지정가치 : 튜파(tufa)란 상온의 민물로부터 주로 이산화탄소의 유리작용이 발생하면서 형성되는 석회암을 뜻함. 정선 무릉리 튜파(tufa)는 과거 한반도의 기후와 지표환경을 지시하는 매우 중요한 지질유산 중의 하나이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보고된 것이어서 이 튜파(tufa)의 존재는 매우 중요한 학술적, 자연유산적인 가치를 가짐
- 문화재구역 : 1필지(13,686㎡)
- 문화재관리단체 : 강원도 정선군

라. 문화재현황

(1) 종별 및 명칭(안) 검토

- 종별 : 천연기념물
- 명칭(안) : 정선 무릉리 튜파(旌善 武陵里 튜파, Mureungri tufa, Jeongseon)

(2) 문화재 현황

○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정선군청에서 화암면 방향으로 약 25km 떨어져 있음
- 지방도 421호선을 따라 남면 무릉리 방향으로 약 8km 이동하면 도로변 좌측에 덕만교가 있으며, 덕만교를 건너 약 300m 이동한 지점의 좌측에 있는 민가 뒷산의 7부 능선에 위치함. 주변은 산지와 농지임
- 인접한 주변 지역에는 민둥산(1118.8m), 민둥산 아래 마을인 발구덕을 중심으로 석회암 지대에서 흔히 나타나는 카르스트 지형이 발달하고 있으며, 현재 12개의 대형 돌리네(doline)와 10개의 석회동굴이 보고되었으며, 카르스트 용천(karst spring)이 발견됨

○ 연혁 및 유래, 특징

- 학계에서는 대부분의 석회암이 열대 및 아열대의 천해환경에서 퇴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육상의 민물 환경에서도 일부의 석회암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음
- 튜파란(tufa) 상온의 민물로부터 주로 CO₂의 유리작용이 발생하면서 형성되는 석회암을 뜻함
- 신생대출라이스토세 후기에 형성된 퇴적체인 것으로 해석되며 안정적인 동굴환경으로부터 박명(薄明)환경 또는 지표 환경으로부터 지형 발달이 이루어지는 동안 형성되었을 것으로 판단
- 급사면 지역에 대기층 탄산염암의 일반적인 암질 특성과는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는 탄산염암질의 암층이 약 1.7 m의 두께와 수 미터 길이를 가지며 소규모로 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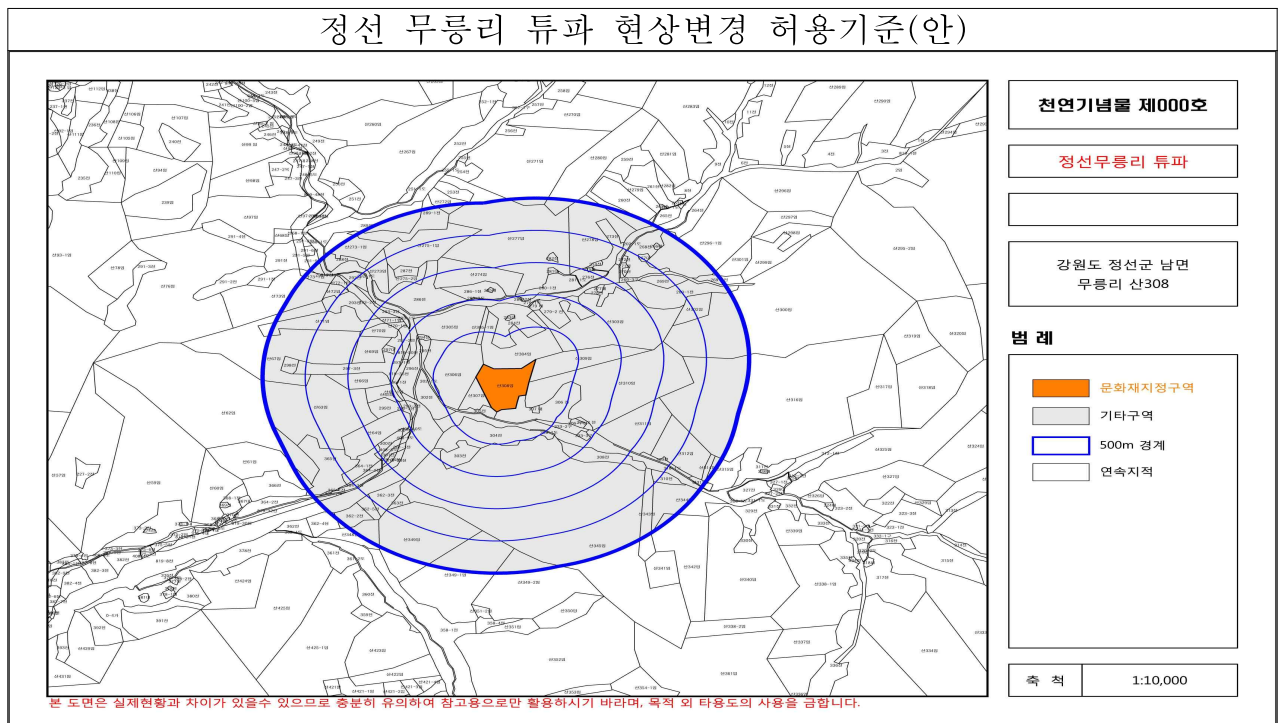
(3)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가치

- 튜파(tufa)란 상온의 민물로부터 주로 이산화탄소의 유리작용이 발생하면서 형성되는 석회암을 뜻함 정선 무릉리 튜파(tufa)는 과거 한반도의 기후와 지표환경을 지시하는 매우 중요한 지질유산 중의 하나이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보고된 것이어서 이 튜파(tufa)의 존재는 매우 중요한 학술적, 자연유산적인 가치를 가짐
- 근거기준 : 천연기념물 <지질·광물·지형> 다. 한반도 지질 현상을 해석하는 데 주요한 지질구조·퇴적구조와 암석

(4) 지정 대상 및 범위

-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무릉리 산308번지, 13,686m²

(5)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1구역	○ 정선군 군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과도한 절·성토 금지 ○ 보호구역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은 심의 대상	

마. 검토의견(*****)

- 무릉리 튜파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존재가 확인되어 보고되는 중요한 학술적 자연유산임.
- 하지만, 무릉리 튜파의 생성과정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여 튜파의 성인과 분포에 대한 보다 정밀한 조사를 실시하여 학술적 검증이 보완된 이후에 천연기념물 지정을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바. 전문가 현지조사 의견 (서면검토·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 서울대교수 현지조사 의견 / 2019.5.23.)

<*** 문화재위원>

- 이 지역은 고생대 캄브리아기 대기층(풍춘층)의 결정질 탄산염암이 분포하는 곳으로, 식생과 토양으로 덮여 있는 급사면 지역에 대기층 탄산염암의

일반적인 암질 특성과는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는 탄산염암질의 암층이 약 1.7m의 두께와 수 m 길이를 가지며 소규모로 노출되어 있음.

- 이 탄산염암질 암층에는 피조이드, 우이드, 스트로마톨라이트 유형의 엽층리 등 다양한 구조와 조직이 발달되어 있으며, 내부에서는 나무편, 화분, 규조 등의 유기체가 확인되어, 이 탄산염암의 기원이 민물 기원임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석됨.
- 이와 같은 이 탄산염암의 민물 기원 특성과 형성 시기가 플라이스토세 후기로 추정되는 연구결과에 의해, 이 탄산염암은 석회동굴 입구부 내지 주변부에서 형성된 튜파로 해석되었음.
- 국내에서 튜파의 산출이 확인된 것은 이 지역이 유일한 지역으로, 산출의 특이성과 희귀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이 탄산염암이 플라이스토세 후기의 튜파 기원임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높은 신뢰도를 가지는 연대 측정 자료가 확보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이 탄산염암층과 주변 대기층 탄산염암층과의 공간적인 접촉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함.
- 따라서 이 탄산염암의 성인에 대한 학술적 검증이 보완된 이후에 천연기념물 지정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편 특이성이 높은 이 탄산염암에 대해 도굴 행위가 부분적으로 확인된 상태임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문화재위원>

- 도로로부터 급경사 사면으로 격리되어 있어 접근이 어려움.
- 튜파의 생성과정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여 튜파의 성인과 분포에 대한 보다 정밀한 조사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상태이며, 보존 규모나 상태에 있어서도 미흡한 편이어서 존재 자체만으로는 천연기념물로서의 지정가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판단됨.

<*** 서울대학교 교수>

- 정선 무릉리 튜파는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녔고, 보존의 필요성은 인정됨. 그러나 튜파의 전반적 규모와 기원에 대한 정보가 빈약하며, 기왕의 연구논문에서 주장되는 내용과 연대 등에 대한 교차 검토가 필요함.

사. 참고사항

(1) 천연기념물 지정 신청 면적 조서(정선군) : 1필지, 13,686㎡

소재지	연번	지번	지목	면적(㎡)		비고
				지적	지정면적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무릉리	1	308	임야	13,686	13,686	
계	1			13,686	13,686	

(2) 천연기념물 지정 검토 면적 조서(문화재청) : 1필지, 13,686㎡

소재지	연번	지번	지목	면적(㎡)		비고
				지적	지정면적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무릉리	1	308	임야	13,686	13,686	
계	1			13,686	13,6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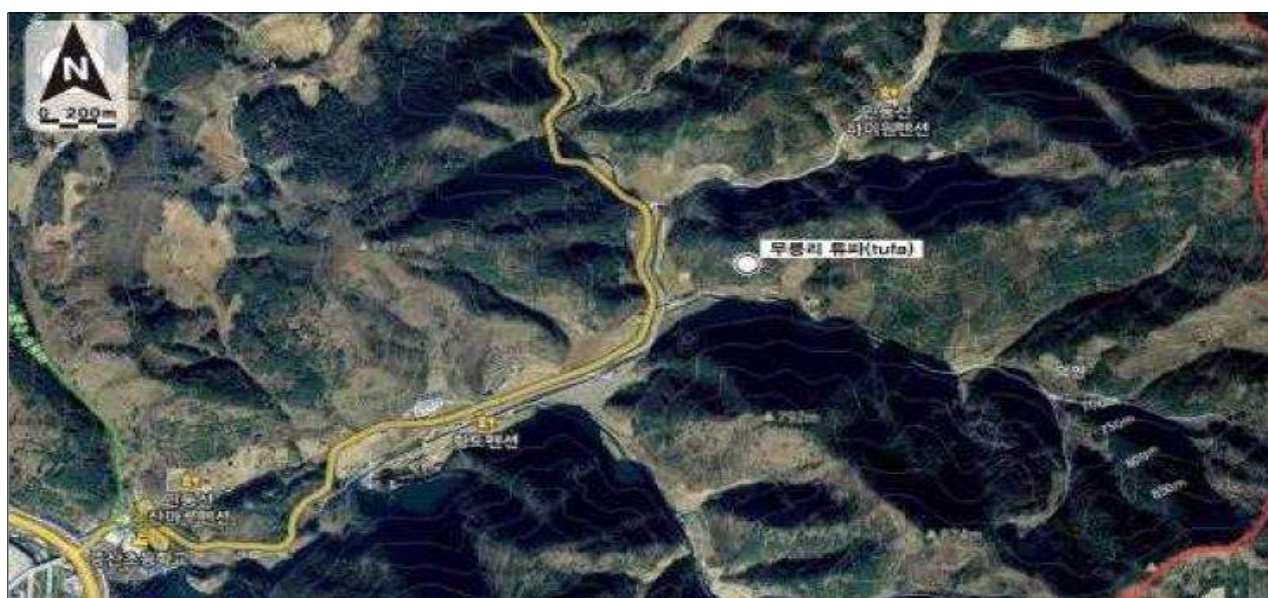
정선 무릉리 튜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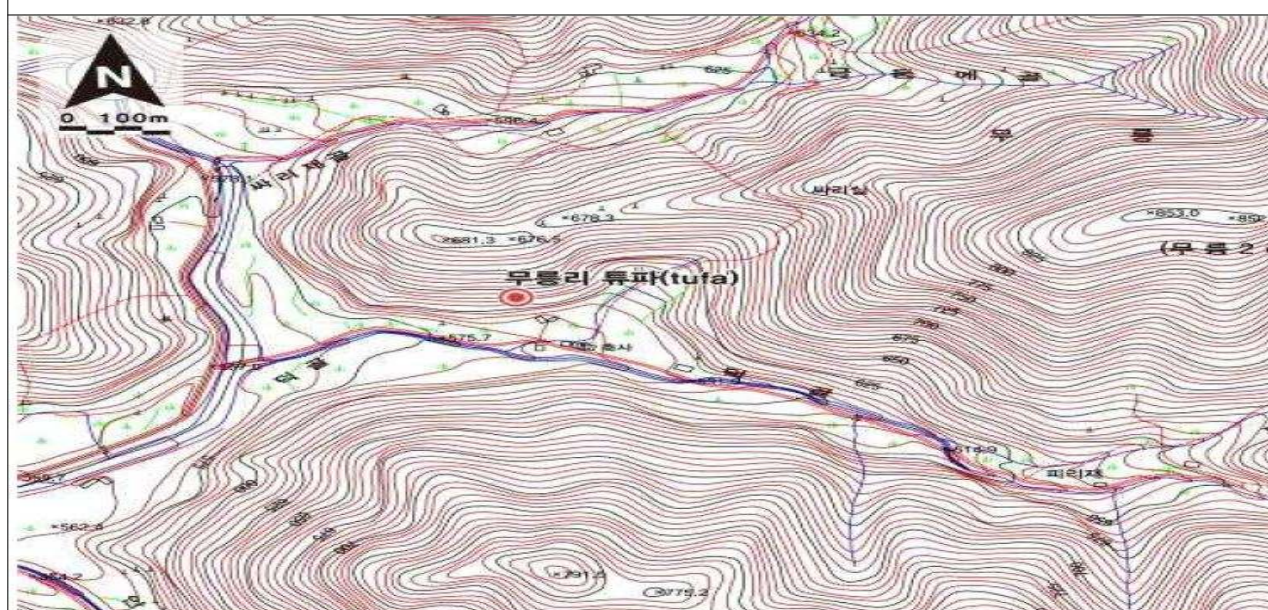
정선 무릉리 튜파(tufa) 퇴적체 주변에서
발견되는 방해석 결정



정선 무릉리 튜파(tufa) 퇴적체 주변에서
발견되는 동굴생성물(석순)



정선 무릉리 튜파 위치도(항공사진)



정선 무릉리 튜파 위치도(수치지형도 1:5,000)

아. 의결사항

○ 보류

- 투표의 성인과 분포에 대한 정밀조사 등 학술적 검증이 보완된 이후 재검토
- 지정 전까지 훼손 방지 계획 수립 및 실시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보류 10명

13. 「정선 봉양리 쥐라기역암」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정선 봉양리 쥐라기역암」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정선 봉양리 쥐라기역암」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가치 등에 대해 검토하고자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신청내용

- 지정명칭 : 정선 봉양리 쥐라기역암
(旌善 鳳陽里 쥐라기礫岩, Bongyangli Jurassic Conglomerate, Jeongseon)
-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지질·광물·지형)
- 소재지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919번지 외
- 지정가치
 - 노두의 생성시기에 우리나라에 강한 조산운동이 일어났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증거이며, 역을 이루는 암석의 종류, 역의 모양과 크기, 역의 크기의 고르기 등이 다양하게 관찰되고 같은 시기에 생성된 우리나라의 역암 중 단연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유수에 의한 마모로 인하여 가장 아름다워 지정가치가 큼
- 문화재구역 : 8필지(138,668m²)
- 문화재관리단체 : 강원도 정선군
- 연혁·유래·특징
 - '반송층군과 이에 대비되는 지층들은 트라이아스기에 우리나라에 강한 조산운동(송림조산 운동)이 일어났음을 지시하는 중요한 지질학적인 증거가 됨 정선에 나타나는 중생대 쥐라기 반송층군의 쥐라기역암은 다른 지역에서 나타는 역암에 비해 그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함 정선에 분포하는 쥐라기역암은 지질학적 가치와 함께 역사문화적으로도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조선 후기의 문인 이명환(李明煥)의 시문집인 해악집 권3에도 정선 쥐라기역암에 대해 언급되어 있으며 이 노두에는 과거 사람들이 새긴 석각들이 분포하기도 함

라. 문화재 현황

(1) 종별 및 명칭(안) 검토

- 종별 : 천연기념물
- 명칭(안) : 정선 봉양리 쥐라기역암
(旌善 鳳陽里 쥐라기礫岩, Bongyangli Jurassic Conglomerate, Jeongseon)

(2) 문화재 현황

○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정선군청에서 조양강을 따라 가리왕산으로 가는 강변길로 약 2km 이동하면 국도 42호선 교량공사를 진행중인 지역 주변의 조양강과 도로 우측의 석벽 및 비봉산 정상으로 가는 등산로와 그 주변에 넓게 위치한다. 주변에 산지와 농지가 분포함

○ 연혁·유래 및 특징

- 반송층군과 이에 대비되는 지층들은 트라이아스기에 우리나라에 강한 조산운동(송림조산 운동)이 일어났음을 지시하는 중요한 지질학적인 증거가 됨 정선에 나타나는 중생대 쥐라기 반송층군의 쥐라기역암은 다른 지역에서 나타는 역암에 비해 그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함. 정선에 분포하는 쥐라기역암은 지질학적 가치와 함께 역사문화적으로도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조선 후기의 문인 이명환(李明煥)의 시문집인 해악집 권3에도 정선 쥐라기역암에 대해 언급되어 있으며 이 노두에는 과거 사람들이 새긴 석각들이 분포하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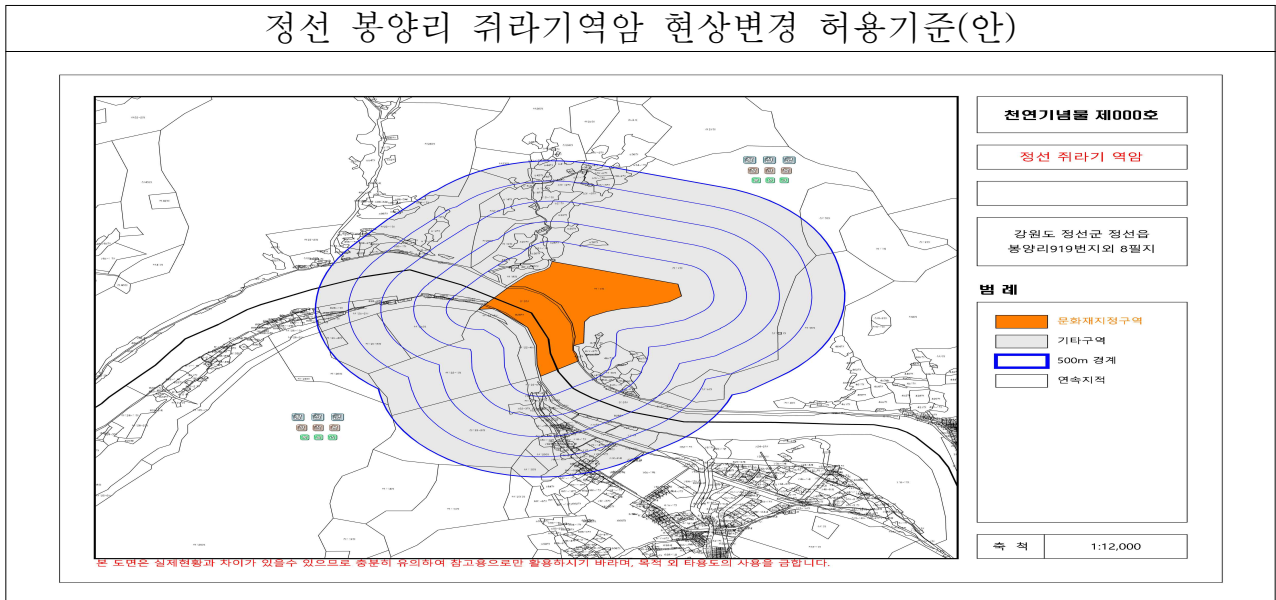
(3)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가치

- 노두의 생성시기에 우리나라에 강한 조산운동이 일어났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증거이며, 역을 이루는 암석의 종류, 역의 모양과 크기, 역의 크기의 고르기 등이 다양하게 관찰되고 같은 시기에 생성된 우리나라의 역암 중단연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유수에 의한 마모로 인하여 가장 아름다워 지정가치가 큼

(4) 지정 대상 및 범위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919번지 등 8필지 138,668㎡

(5)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1구역	○ 정선군 군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과도한 절·성토 금지 ○ 보호구역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은 심의 대상	

마. 검토의견(*****)

- 국내에는 충북 단양으로부터 정선에 이르기까지 쥐라기의 역암이 분포하며, 이 역암은 한반도 지질구조 역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중 하나임.
- 국내 여러지역에서 쥐라기 역암이 나타나지만 이 지역은 보전상태와 노두의 발달이 국내에서는 가장 대표성을 보여주는 노두임.
- 국가지정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음.

바. 전문가 현지조사의견 (서면검토·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 서울대교수 현지조사 의견 / 2019.5.23.)

<*** 문화재위원>

- 하천 변과 바닥에 산재되어 있는 중생대 쥐라기 역암의 전석으로부터 쥐라기 시대 한반도의 고환경을 이해하는 데에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되는

역암 퇴적층의 퇴적학적 특성(퇴적환경, 고수류 방향, 기원지의 지질, 기후 등)이 성층면과 퇴적단면에서 입체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 지역으로, 역암의 야외교과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국내의 대표적인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이 지역의 역암 전석이 가지는 자연유산적 가치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해 배후의 원지층 분포지와 함께 국가지정 기념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정 근거: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천연기념물 지질분야)
 - 다. 한반도 지질 현상을 해석하는 데 주요한 지질구조·퇴적구조와 암석
 - 2) 퇴적구조: 연흔(漣痕), 건열(乾裂), 사층리(斜層理), 우흔(雨痕) 등
 - 3) 그 밖에 특이한 구조의 암석

<*** 문화재위원>

- 하천의 하상에 거력 상태로 놓여 있어 국내 타지역의 역암에 비해 보존 상태가 양호하며, 매우 중요한 지질학적 가치 및 자연유산적 가치를 지님.
- 하천 양안에 역암을 근접하여 관찰할 수 있는 데크 시설과 설명표지판을 설치하고, 안전을 고려하여 보호지역과 조금 떨어진 도로 상에 포켓 형태의 주차시설 설치 필요함.
- 타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귀중한 자연유산으로 천연기념물로서의 충분한 지정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서울대학교 교수>

- 정선 쥐라기역암은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919번지의 조양강변과 비봉산 등산로 주변에 넓게 분포함. 조선조 후기의 이명환이 그의 문집에서 역암의 모습을 기술하였고, 노두에는 조영화, 오형목 등의 암각자가 발견되는 등 선인들이 관심을 두었던 흔적이 다분함.
- 정선 봉양리 쥐라기역암은 중생대 쥐라기시대에 형성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였던 강력한 조산운동을 지시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반송층군에 속함.
- 정선 쥐라기역암은 대비되는 충청북도 단양 지역에서 나타나는 쥐라기 역암이나 경상북도 단산층군에서 나타나는 산수동역암에 비해 보존상태가 양호함.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 천연기념물 지정기준에 명시된 ‘다. 한반도 지질 현상을 해석하는 데 주요한 지질구조·퇴적구조와 암석’에 속함.
- 쥐라기역암이 급경사면과 등산로, 그리고 전석의 형태로 하천과 도로에 걸쳐 발견되기 때문에 합당한 관리방안이 요구됨. 특히, 교육자료로

활용될 것을 감안하여 학술적 설명이나 안내를 위한 보조장치를 적절하고도 안전하게 장비할 필요가 있음.

- 국내의 타지역에서 발견되는 역암에 비해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우리나라의 지질계통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학술적 가치가 있음. 지구과학의 교육 자료로서 또한 역사문화적 자료로서 활용도가 탁월하다고 판단됨.

사. 참고사항

(1) 천연기념물 지정 신청 면적 조서(강원도) : 8필지 138,668㎡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비 고
			지적	지정면적	
계			1,702,365	138,668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17-2	임야	10,207	693	정선군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17-5	도로	11,015	11,015	국(국토부)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산17	임야	708,303	69,970	정선군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6-1	도로	17,790	1,928	국(건설부)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6-15	도로	1,100	1,100	국(건설부)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6-16	도로	353	353	국(건설부)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919	하천	693,261	38,181	국(건설부)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828	하천	260,336	15,428	국(건설부)

(2) 천연기념물 지정 검토 면적 조서(문화재청) : 8필지 138,668㎡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비 고
			지적	지정면적	
계			1,702,365	138,668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17-2	임야	10,207	693	정선군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17-5	도로	11,015	11,015	국(국토부)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산17	임야	708,303	69,970	정선군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6-1	도로	17,790	1,928	국(건설부)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6-15	도로	1,100	1,100	국(건설부)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6-16	도로	353	353	국(건설부)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919	하천	693,261	38,181	국(건설부)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828	하천	260,336	15,428	국(건설부)



정선 봉양리 쥐라기역암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심곡리에



분포하는 판송층군의 귀라기역암



경상북도 문경시 농암면 민기리에



분포하는 단산층군의 산수동역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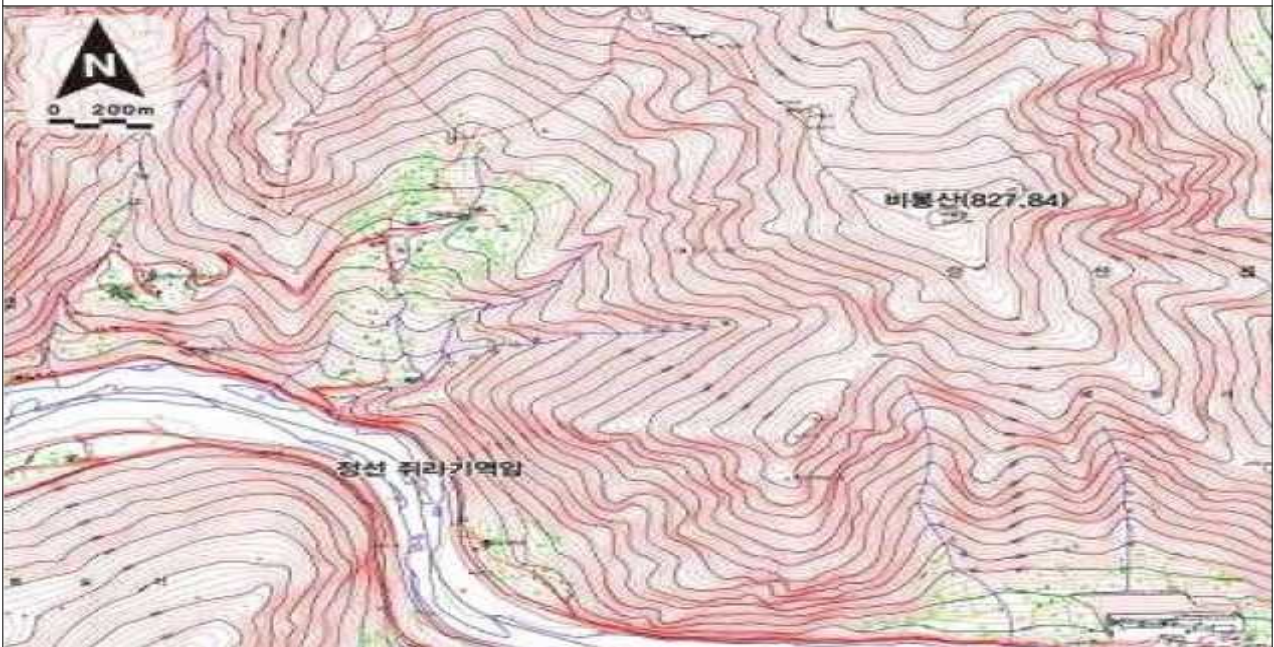
비룡산 등산로에 위치한 관음대에서 바라본 정선 귀라기역암의 전경사진



비룡산 등산로와 그 주변에 분포하는 정선 귀라기역암



정선 봉양리 취락기역암 위치도(항공사진)



정선 봉양리 취락기역암 위치도(수치지형도 1:5,000)

바. 의결사항

- 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가결 10명

14. 「정선 화암약수」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정선 화암약수」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정선 화암약수」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가치 등에 대해 검토하고자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신청내용

- 지정명칭 : 정선 화암약수
(旌善 畫岩藥水, Hwaamyaksu Mineral Water, Jeongseon)
-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지질·광물·지형)
- 소재지 :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1175-1번지
- 지정가치
 - 2010년 지형·지질 문화재 정밀조사 보고서(2010, 문화재청)」에 의하면 화암약수는 탄산과 철분의 함량이 높아 수질의 측면에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높은 편임 또한 약수터 주변의 계곡과 산지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현재는 국민관광단지로 조성되어 있으며 여름철 피서지로 각광받고 있을 정도로, 약수터의 경관미가 뛰어나고, 지역의 경제적 활성화에도 높이 기여함
- 문화재구역 : 1필지(60㎡)
- 문화재관리단체 : 강원도 정선군
- 연혁·유래·특징
 - 1910년경 문명무가 청룡과 황룡이 승천하는 꿈을 꾸고 이 약수를 발견했다고 하며, 성정이 악한 사람이 이 약수를 마시려 하면 구렁이가 들어 있는 형상을 띠어 물을 마시지 못하게 했다는 전설을 지니고 있음
 - 1977년 국민관광지로 지정되면서 주차장, 야영장, 수목원 등 체험관광 시설과 숙박시설, 토산품 상가 등이 세워지면서 일반인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함

- 화암약수는 수질특성을 기준으로 할 때, 철분과 탄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철분 탄산수로 분류할 수 있음 화암약수의 성분은 탄산 645mg/l, 황산 34mg/l, 염소 4.3mg/l, 철0.83mg/l, 망간 0.16mg/l, 구리 0.029mg/l, 아연 0.003 mg/l 임

라. 문화재 현황

(1) 종별 및 명칭(안) 검토

- 종별 : 천연기념물
- 명칭(안) : 정선 화암약수
(旌善 畫岩藥水, Hwaamyaksu Mineral Water, Jeongseon)

(2) 문화재 현황

○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정선군청에서 화암면 방향으로 국도 59호선을 따라 약 6.5km 이동하면 덕우삼거리가 나옴 이 덕우삼거리에서 직진하여 지방도 424호선을 따라 약 10.5km 이동하면 도로변 우측 편에 약수교가 나오고 이 다리를 건너서 약 1.2km 이동하면 쌍약수가 나오고 여기에서 약 300m 더 이동하면 본약수가 나옴 이 본약수가 화암약수이며 현재 약수로 사용 중임 화암약수 주변에는 약수터 주변으로 보호각(팔각정)이 있으며 화암약수 캠핑장과 주차장이 있음

○ 연혁·유래 및 특징

- 1910년경 문명무가 청룡과 황룡이 승천하는 꿈을 꾸고 이 약수를 발견했다고 하며, 성정이 악한 사람이 이 약수를 마시려 하면 구렁이가 들어 있는 형상을 띠어 물을 마시지 못하게 했다는 전설을 지니고 있음
- 1977년 국민관광지로 지정되면서 주차장, 야영장, 수목원 등 체험관광 시설과 숙박시설, 토산품 상가 등이 세워지면서 일반인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함
- 화암약수는 수질특성을 기준으로 할 때, 철분과 탄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철분 탄산수로 분류할 수 있다. 화암약수의 성분은 탄산 645mg/l, 황산 34mg/l, 염소 4.3mg/l, 철0.83mg/l, 망간 0.16mg/l, 구리 0.029mg/l, 아연 0.003 mg/l 임

(3)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가치

- 「2010 지형·지질 문화재 정밀조사 보고서(2010, 문화재청)」에 의하면 화암약수는 탄산과 철분의 함량이 높아 수질의 측면에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높은 편임 또한 약수터 주변의 계곡과 산지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1175-1번지, 1필지 60㎡

마. 검토의견(***)**

- 2010년 천연기념물과에서 주관하여 실시한 지형·지질 문화재 정밀조사 시 전국 20개 약수를 조사한 결과 “우수” 평가를 받음.
- ※ 당시 우수평가를 받은 5개 약수 중 “양양 오색리 오색약수, 홍천 광원리 삼봉약수, 인제 미산리 개인약수”는 2011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관리 중임.
- 화암약수 또한 “우수” 평가를 받았지만, 약수터 주변이 인위적으로 교란되어 약수터의 자연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으며, 약수터 또한 석재와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팔각정이 들어서 있어 약수터의 원래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임.
- 천연기념물로 지정 관리할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 지정된 강원도의 다른 약수와 지질·지형·경관 및 약수로서의 가치 등의 차별성을 확보가 필요함.

바. 전문가 현지조사 의견 (서면검토·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 서울대교수 현지조사 의견 / 2019.5.23.)

<* 문화재위원>**

- 탄산과 철분을 다량 함유하는 수질 특성과 함께, 인근 하천수의 성분과 다른 성질을 가지는 수리지질학적 특성은 일정 부분 특이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이 약수 형성의 지질 및 지형적 배경 특성과 수리지질학적 특성에 대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약수가 가지는 자연유산적 가치의 특이성과 차별성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없음으로, 이에 대한 자료가 보완된 이후 천연기념물 지정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문화재위원>**

- 약수터의 문화·역사적 가치가 보통임.
- 약수터가 인위적으로 조성되어 있고, 약수터 주변이 난개발되어 자연성이 낮은 편이며, 주변의 자연 경관미도 보통임.
- 인접한 골짜기의 오염상태, 약수터와 보호시설 경관의 부조화, 안내입간판 내용 오류 등으로 보아 천연기념물로서의 지정가치에 못미치는 것으로 판단함.

<* 서울대학교 교수>**

- 화암약수는 탄산과 철분의 함량이 높고, 주변의 계곡과 산지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국민관광단지로 조성되어 있다. 그러나, 지하수유동을 포함한 지형·지질·식생 등과 함께 역사·문화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국가 지정문화재로서의 기준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사. 참고사항

(1) 천연기념물 지정 신청 면적 조서(강원도) : 1필지 60m²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m ²)		비 고
			지 적	지 정 면 적	
계			18,296	60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1175-1	구 거	18,296	60	국(건설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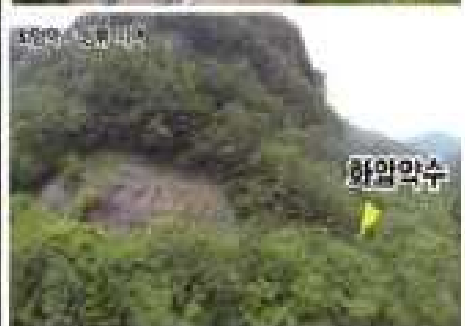
(2) 천연기념물 지정 검토 면적 조서(문화재청) : 1필지 60m²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m ²)		비 고
			지 적	지 정 면 적	
계			18,296	60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1175-1	구 거	18,296	60	국(건설부)





팔각정 내부(좌하)와 외부(우하)의 약수와 주변사진



화암약수와 화암약수가 위치한 국민관광단지 내의 항공사진 {촬영장비- 드론: (HobbyLord) Bumblebee, 카메라: Gopro3+black Edition }



정선 화암약수 위치도(항공사진)



정선 화암약수 위치도(수치지형도 1:5,000)

아. 의결사항

○ 보류

- 약수가 가지는 자연유산적 가치의 특이성과 차별성에 대한 자료가 보완된 후 재검토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보류 10명

15. 「정선 화암동굴」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정선 화암동굴」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정선 화암동굴」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가치 등에 대해 검토하고자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신청내용

- 지정명칭 : 정선 화암동굴(旌善 畫岩洞窟, Hwaamgul Cave, Jeongseon)
-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지질·광물·지형)
 - * 현재 강원도기념물 제33호(1980.2.26.)임
- 소재지 :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248번지 외
- 지정가치
 - 동굴내에는 갱도로 사용한 굴과 천연동굴이 혼재하고 있으며 천연동굴은 대규모의 공간을 이루어 광장형(장축 약 100 m)으로 발달되어 있으며, 하얀색을 띠는 대형의 석순, 석주, 종유석, 곡석, 석화 등이 발달해 있으며 특히, 미공개구간에서는 다양한 색깔, 형태와 크기의 석화의 발달이 뛰어나 국내 다른 석회동굴에서 발견되는 것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모양과 색을 지녀 학술적·자연유산적 가치가 큼
- 문화재구역 : 8필지(370,595m²)
- 문화재관리단체 : 강원도 정선군

라. 문화재 현황

(1) 종별 및 명칭(안) 검토

- 종별 : 천연기념물
- 명칭(안) : 정선 화암동굴(旌善 畫岩洞窟, Hwaamgul Cave, Jeongseon)

(2) 문화재 현황

○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정선군청에서 화암면 방향으로 국도 59호선을 따라 약 6.5km 이동하면 덕우삼거리가 나온다 이 덕우삼거리에서 직진하여 지방도 424호선을 따라 약 7.7km 이동하면 도로변 좌측 편에 종류교가 나오고 이 다리를 건너면 화암동굴 관리사무소 및 주차장이 나온다. 동굴 입구까지는 주차장에서부터 모노레일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방법{유료-1인당 3,000원(성인), 약 8분 소요}과 도보로 약 700m 이동하는 방법(약 20분 소요)이 있음.
- 각희산의 서쪽 사면에 화암동굴이 발달하고 있음

○ 연혁·유래 및 특징

- 1980년 2월 26일 강원도기념물 제33호로 지정된 화암동굴은 천포광산 갱도 작업 중 1934년 3월에 발견되었음 이후 1993년 3월~1998년 3월까지 1차 개방 후, 동굴 내부를 재정비하여 2000년 6월 테마형 동굴로 재개방 하였음 인공갱도 포함 총길이 1.8km, 천연동굴의 규모는 약 320m(추후 정확한 측량 조사 요)로 추정되며 남동-북서방향으로 발달하고 수직과 수평통로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형태를 띠는 석회동굴임 동굴 내부에는 다양한 종류의 동굴생성물이 발달하고 특히 독특한 모양과 색을 갖는 곡석과 석화가 발달함

(3)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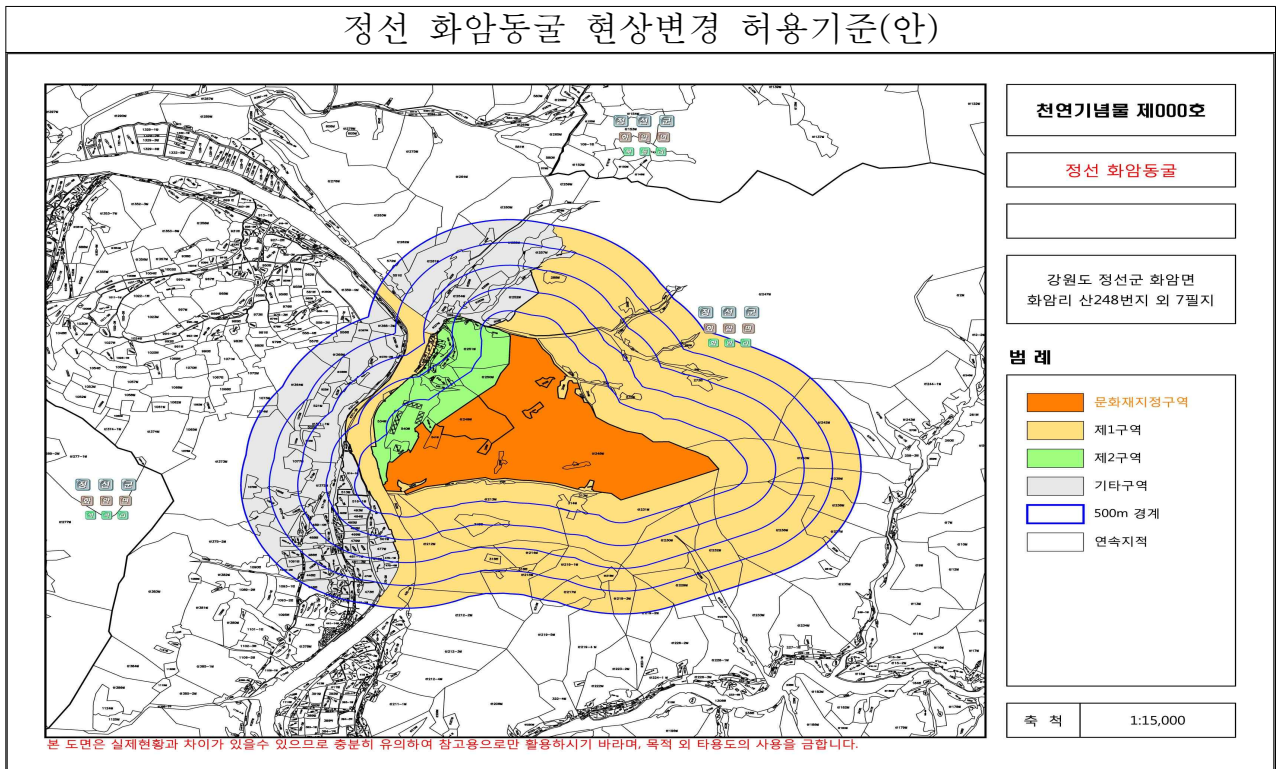
- 동굴내에는 갱도로 사용한 굴과 천연동굴이 혼재하고 있으며 천연동굴은 대규모의 공간을 이루어 광장형(장축 약 100 m)으로 발달되어 있으며, 하얀색을 띠는 대형의 석순, 석주, 종유석, 곡석, 석화 등이 발달해 있으며 특히, 미공개구간에서는 다양한 색깔, 형태와 크기의 석화의 발달이 뛰어나 국내 다른 석회동굴에서 발견되는 것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모양과 색을 지녀 학술적·자연유산적 가치가 큼

(4) 지정 대상 및 범위

-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248 등 8필지 370,595m²

(5)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정선 화암동굴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개축, 재축 허용		
제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제3구역	○ 정선군 군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지정구역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금지 ○ 문화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과도한 절·성토 금지		

마. 검토의견(*****)

- 동굴 내 대형광장에는 석화와 국내에서 유일하게 직선상으로 휘어진 형태의 곡석이 분포하여 뛰어난 경관적 가치와 지질학적 가치를 보임.
- 동굴내에는 갱도로 사용한 굴과 천연동굴이 혼재하고 있어, 지정 구역은 천연상태로 보존되어 있는 공간(미개방동굴 공간 포함)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 동굴 내 미개방 구간 및 동굴 하층에 대한 완전한

탐사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우선 정선군에서 제출한 안으로 지정구역을 정하고, 갯도 부분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향후 3D 측량 및 종합학술조사를 통해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함.

- 지정구역 중 98%가 사유지로 지정후 토지매입 요구 및 재산권 행사 등으로 인한 관리상 문제 사항이 유발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함.

바. 전문가 현지조사 의견 (서면검토 · 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 서울대교수 현지조사 의견 / 2019.5.23.)

<*** 문화재위원>

- 1934년에 금광 개발의 과정에 발견된 석회동굴(강원도 기념물 제 33호, 1980년 지정)로, 대체로 인공 갯도의 가지굴 성격으로 분포되어 있음.
- 천연 동굴 공간의 경우, 개방 동굴과 미개방 동굴로 나뉘어져 있으며, 개방 동굴의 경우 대규모의 공간을 이루어 광장형(장축 약 100 m)으로 발달되어 있음.
- 이 광장 내에는 대형의 석주와 석순, 종유석 등이 발달되어 있으며, 특히 천장부에 형성된 다양한 특성의 석화와 곡석은 특이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됨.(한국동굴연구소의 기초연구조사 결과 ‘가’등급으로 평가됨)
- 이와 같은 천연 상태 동굴 공간의 규모와 발달된 동굴생성물의 특이성 등을 고려할 때, 천연기념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지정 공간은 천연상태로 보존되어 있는 공간(미개방동굴 공간 포함)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각종 인공시설이 조성되어 있는 입출구부의 금광 개발에 의한 갯도형 동굴은 제외되어야 할 것임.
- 천연기념물 지정 이후, 현재 이 동굴의 주요 탐방 및 관광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동굴과 연계되어 있는 금광 개발 공간에 대해서는, 이 금광의 지질학적 특성과 근대사적 가치에 대한 학술자료를 확보하여 화암동굴의 학술 및 역사적 가치를 제고시켜야할 것임.
- 지정 근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천연기념물 지질분야)

라. 학술적 가치가 큰 자연지형

- 3) 침식 및 퇴적 작용에 의하여 형성된 지형: 사구, 해변(海濱), 갯벌, 육계도, 사행천(蛇行川), 석호(潟湖), 카르스트 지형, 석회동굴, 돌개구멍(pot hole), 침식분지, 협곡, 해식애(海蝕崖), 선상지(扇狀地), 삼각주, 사주(砂洲) 등

<*** 문화재위원>

- 곡석과 석화 등의 동굴생성물의 희소성을 지녀 학술적 및 자연유산적 가치를 지님.

- 금 채굴 광산을 위한 동굴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석회동굴 내에서도 커다란 광장이 있는 chamber 형태의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한정적인 부분만 천연기념물로서의 지정가치를 지니고 있음.

<*** 서울대학교 교수>

- 화암동굴의 chamber는 탁월한 규모이며, chamber에서 다양한 동굴생성물이 동시에 관찰된다. 석주와 석순, 종유석, 커튼 등 비교적 큰 규모의 동굴 생성물과 함께, 작거나 미세한 규모의 석화와 곡석이 발견됨. 동시에 다양한 단층선과 절리, 낙반 등은 지형학적·지사학적 연구가치가 다분함.
- 현재까지의 조사에 따르면, 3문 6강 15목 23과 24속 24종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동굴생물학적으로도 탁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됨.

사. 참고사항

(1) 천연기념물 지정 신청 면적 조서(강원도) : 8필지 370,595㎡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지적	지정면적	
계			382,280	370,595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248	임야	326,678	326,678	***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249	임야	43,441	31,756	***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302	전	1,600	1,600	***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307	임야	1,884	1,884	***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308	임야	1,580	1,580	***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309	전	1,646	1,646	정선군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311	전	1,603	1,603	국(재정경제원)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541	유원지	3,848	3,848	정선군

(2) 천연기념물 지정 검토 면적 조서(문화재청) : 8필지 370,595㎡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지적	지정면적	
계			382,280	370,595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248	임야	326,678	326,678	***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249	임야	43,441	31,756	***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302	전	1,600	1,600	***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307	임야	1,884	1,884	***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308	임야	1,580	1,580	***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309	전	1,646	1,646	정선군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311	전	1,603	1,603	국(재정경제원)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비고
			지적	지정면적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541	유원지	3,848	3,848	정선군



그림1. 화암동굴 비공개구간 중 일부구간에 발달해 있는 곡석과 석화



그림2. 화강암질 비공극구간 중 일부구간에 발달해 있는 곡선과 석화



그림3. 화강암질 비공극구간 중 일부구간에 발달해 있는 곡선과 석화



화암동굴 내부에서 성장하는 대형 석순과 석주



화암동굴 내부에서 성장하는 풍유석과 풍유편



화암동굴 내부에서 성장하는 대형 석주와 석순



화암동굴 내부에서 성장하는 대형 유석



화암동굴 내부에서 성장하는 풍유편과 석화



화암동굴 내부에서 성장하는 석화



화암동굴 내부에서 성장하는 풍유석과 석화



화암동굴 내부에서 성장하는 석화



화암동굴 내부에서 성장하는 석화와 곡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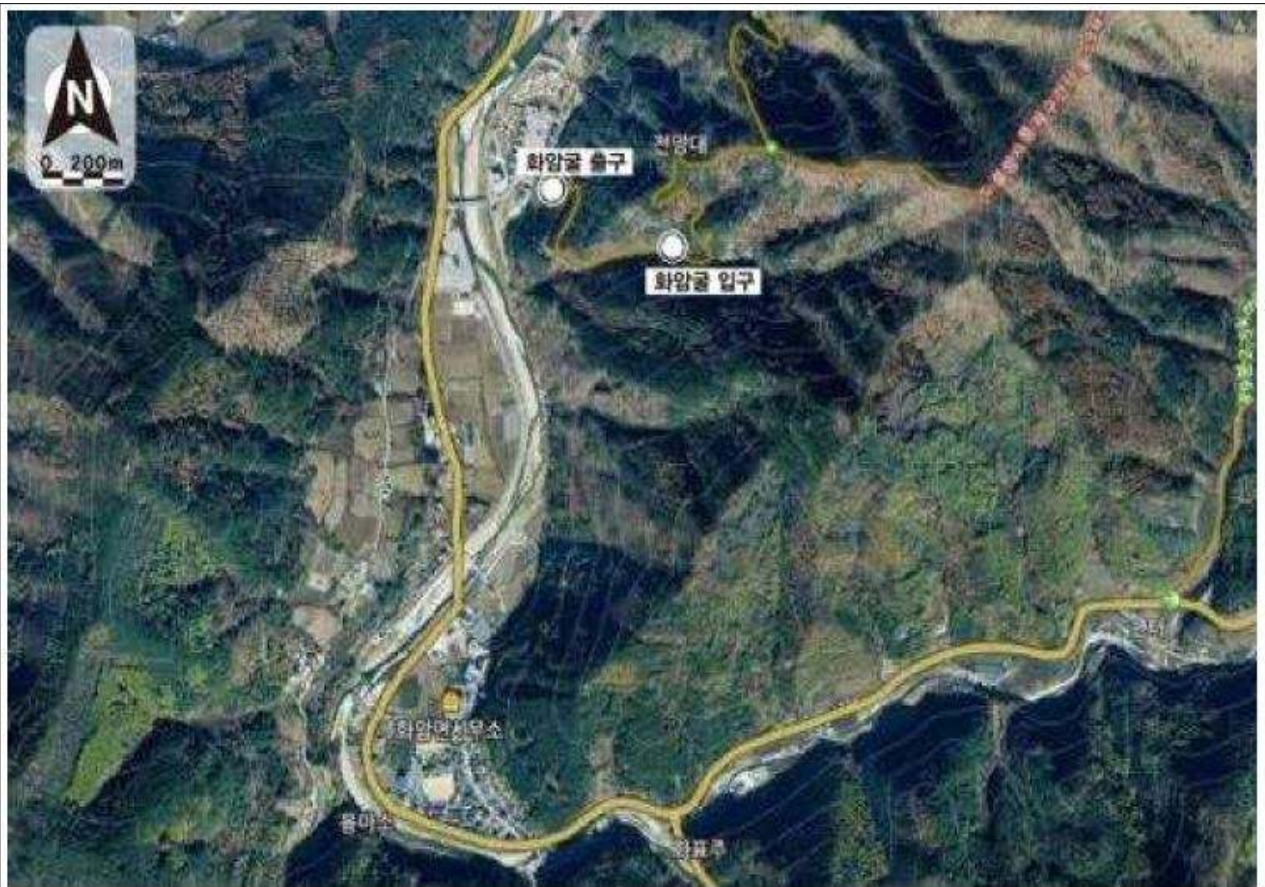
화암동굴 내부에서 성장하는 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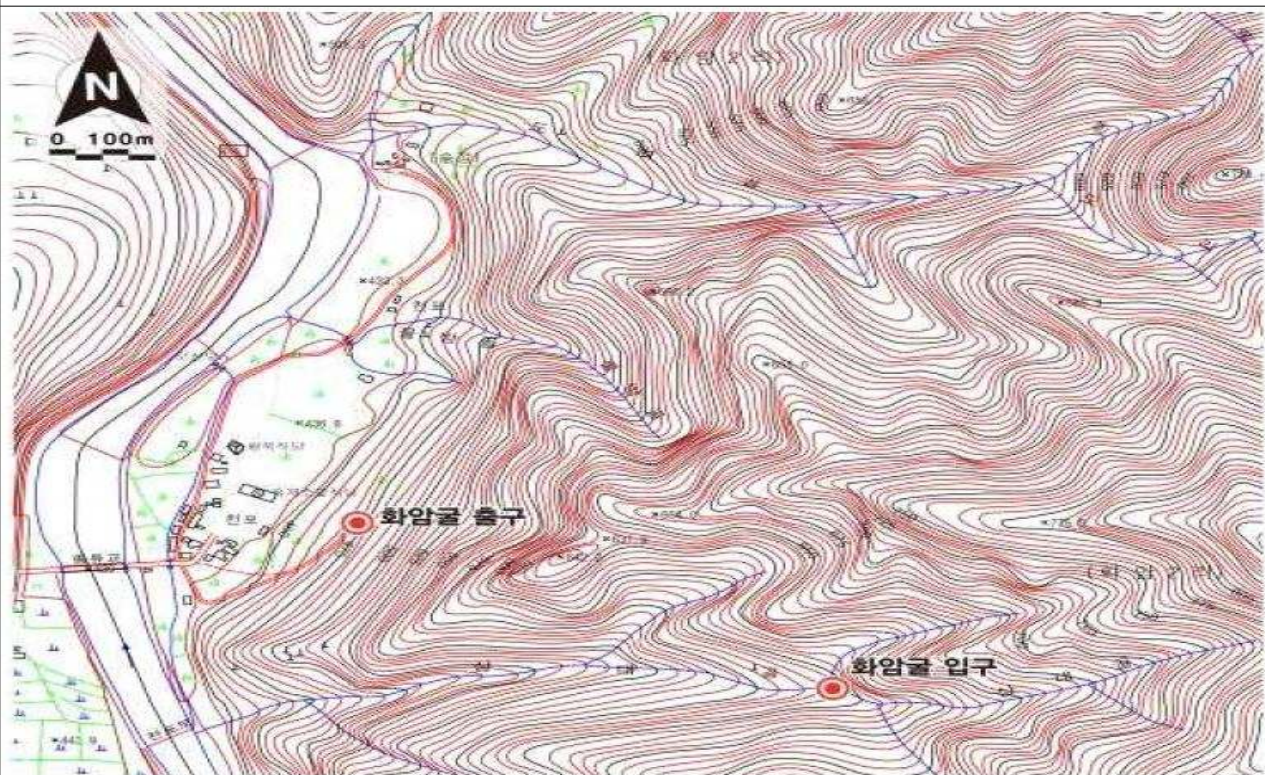
화암동굴 내부에서 성장하는 곡석



화암동굴 내부에서 위치하는 호수구간



정선 화암동굴 위치도(항공사진)



정선 화암동굴 위치도(수치지형도 1:5,000)



아.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동굴 내 대형광장 중 천연생태 동굴공간의 규모와 발달된 동굴생성물의 특이성 등을 고려할 때 천연기념물로서의 가치를 지니나 인공시설이 조성되어 있는 갯도부분은 보호구역으로 지정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조건부 가결 10명

16. 「정선 구미정사와 골지천」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정선 구미정사와 골지천」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정선 구미정사와 골지천」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가치 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신청내용

- 지정명칭 : 정선 구미정사와 골지천(旌善 九美精舍와 骨只川)
Gumijeongsa House and Golji River, Jeongseon
- 지정종별 : 명승
- 지정기준 : 저명한 경승지(정원)
- 소재지 :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봉산리 산522번지
- 지정가치 : 조영된 유래 등이 잘 남아있으며, 특히 골지천의 바위·암반과 어우러진 9美 18景과 같이 계류별서 특징이 잘 나타나 있음
수려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적 의미가 더해져 지정가치가 높음
- 문화재구역 : 14필지(71,846㎡)
- 문화재관리단체 : 강원도 정선군

라. 문화재 현황

(1) 종별 및 명칭(안) 검토

- 지정종별 : 명승
- 지정명칭 : 정선 구미정사와 골지천(旌善 九美精舍와 骨只川)
Gumijeongsa House and Golji River, Jeongseon

(2) 문화재 현황

-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남한강 상류인 골지천(임계천)이 감입곡류(嵌入曲流)하면서 침식작용을 일으켜 만든 하식절벽, 평탄한 하상(河床), 여울, 소(沼) 등의 하식지형이 발달하여 자연경관이 우수함
- 주변은 절벽노두와 골지천이며, 골지천은 남한강의 발원천으로 한강 최상류임 골지천을 따라 생겨난 많은 소, 여울, 절벽 등이 하천바닥을 이루고 있으며 마을 밭 등과 어우러져 있음. 또한 하천 건너 절벽 꼭대기에는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조망점(임계면 낙천리 사을기)이 있음

○ 연혁·유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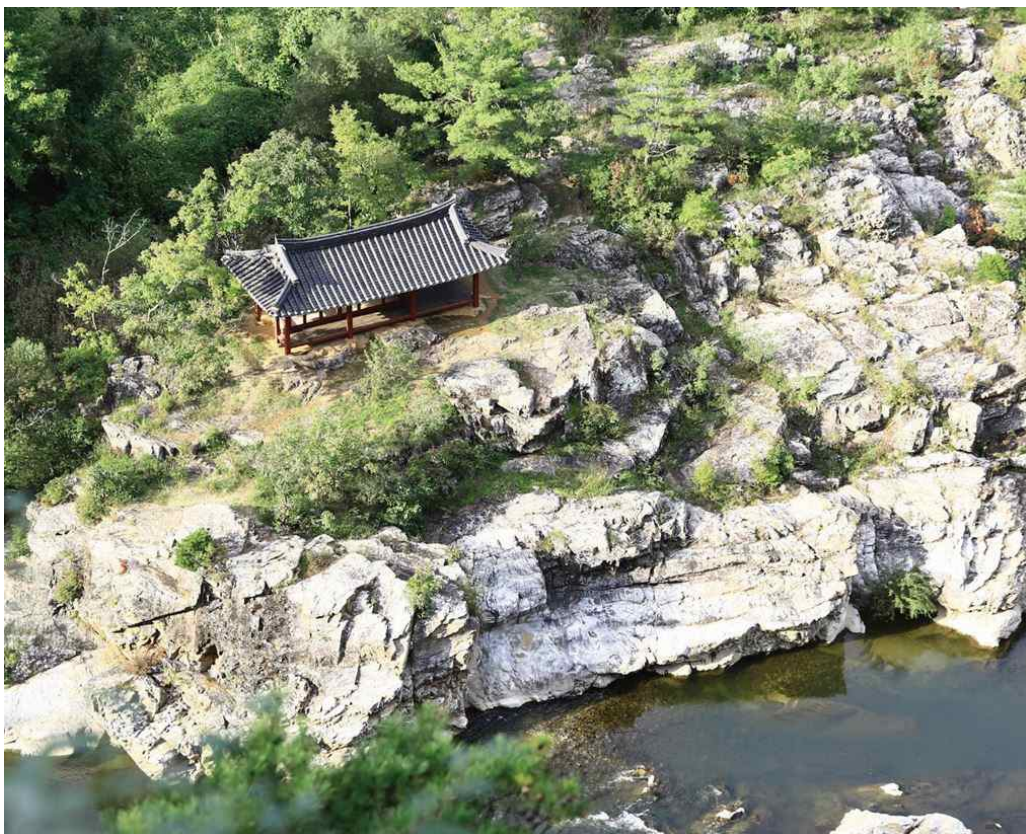
- 조선 숙종 때 공조참의를 역임한 수고당(守孤堂) 이자(李蕃)가 건립하였으며 정자 주위에 ‘아홉 가지 경관이 아름답다’ 하여 『구미정사』라 명명함
- 작정자인 이자는 1652년 6월 25일 문충공 단하(端夏)의 차남이며 택당(澤堂) 이식(李植)의 손자임 1689년 3월 30일 선친 외재공이 사망하여 3년 상(喪)을 마친 뒤 41세이던 1692년 정선 임계면 봉산리에 낙향함 1734년 통정대부에 올라 공조참의를 역임 후 1737년 1월 24일 84세로 사망함 1794년 6월 3일 자헌대부 이조판서 겸 동지의금부사 도총관에 추증됨
- 작정유래는 정선에 낙향하면서 1692년 할아버지 이식, 아버지 이단하 등의 서적을 보존하기 위해 경관이 좋은 주변에 조성함
- 관련 기록

고문헌(기사명)	저자 및 소장처	경관 경물 용어	내용
수고당기(守孤堂記)	이병모(李秉模)(이자 기문 포함)	구미정사의 본제 수고당(守孤堂)	이병모가 지은 기문
9미9경(九美九景)	구형진(具衡鎭) 『가문 소장문집』	열수(列岫), 평암(平岩), 층대(層臺), 정담(澄潭), 반서(般嶼), 취벽(翠壁), 어량(魚梁), 석지(石池)	이형진이 구미구경을 읊은 7언 절구 8수
수고당 이자 행장(贈吏曹判書行工曹參議守孤李公行狀)	경기대 소장	구미(九美), 기기와(棄棄窩)	이자가 세속을 등지고 자연을 벗하여 구미정사를 짓고 9경을 읊음.
이자 묘지명(工曹參議李公墓誌銘)	김양행(金亮行) 『지암집(止庵集)』 권8	구미계(九美溪), 구미정사(九美精舍)	이자가 자신을 구미계에 묻어달라 한 내용
과 구미 이 처사 산장(過九美李處士山庄) 방문기록	이명환(李明煥), 『해악집(海嶽集)』 권1,	구미정사(九美精舍)	산이 깊고 경치가 아름답음

해악지행(海嶽之行)	이명환(이명환), 『해악집(海嶽集)』 권3	구미지산(九美之山)	긴 못과 너른 들, 기이한 봉우리, 온갖 계곡을 갖춘 명승
과수고(過守孤), 방문기록	신범(辛汎) 『봉서유고(蓬西遺稿)』 권1	구미(九美)	수고당 인품의 고매함. 9미의 아름다움 조망

○ 특징

- 구미정사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1칸 크기의 민도리 3량가 팔작지붕집으로 1946년 중수된 중당협실형 영남지방 정자와는 달리 한쪽에만 방을 둔 편방식 평면으로 지역적 특색 있음 평소 빼대만 남겼다가 유사시 벽과 창호를 끼워 맞춰 방을 구획하고 이용하는 구조는 매우 실리적이고 사례가 드뭄. 절벽, 하천, 연못, 밭두둑을 모두 완상할 수 있는 바위 위에 건축함
- 현재의 구미정사 건물은 1946년 중수된 후 여러 차례 보수한 상태이며, 전체 3칸 중 2칸은 온돌바닥의 방이 있었으나 지금은 골조만 남아 있음
- 구미정사의 주변 경관은 골지천이 감입곡류하면서 하부고생대의 풍화에 강한 규암층 지역에 침식작용을 일으켜 여러 가지 하식지형이 발달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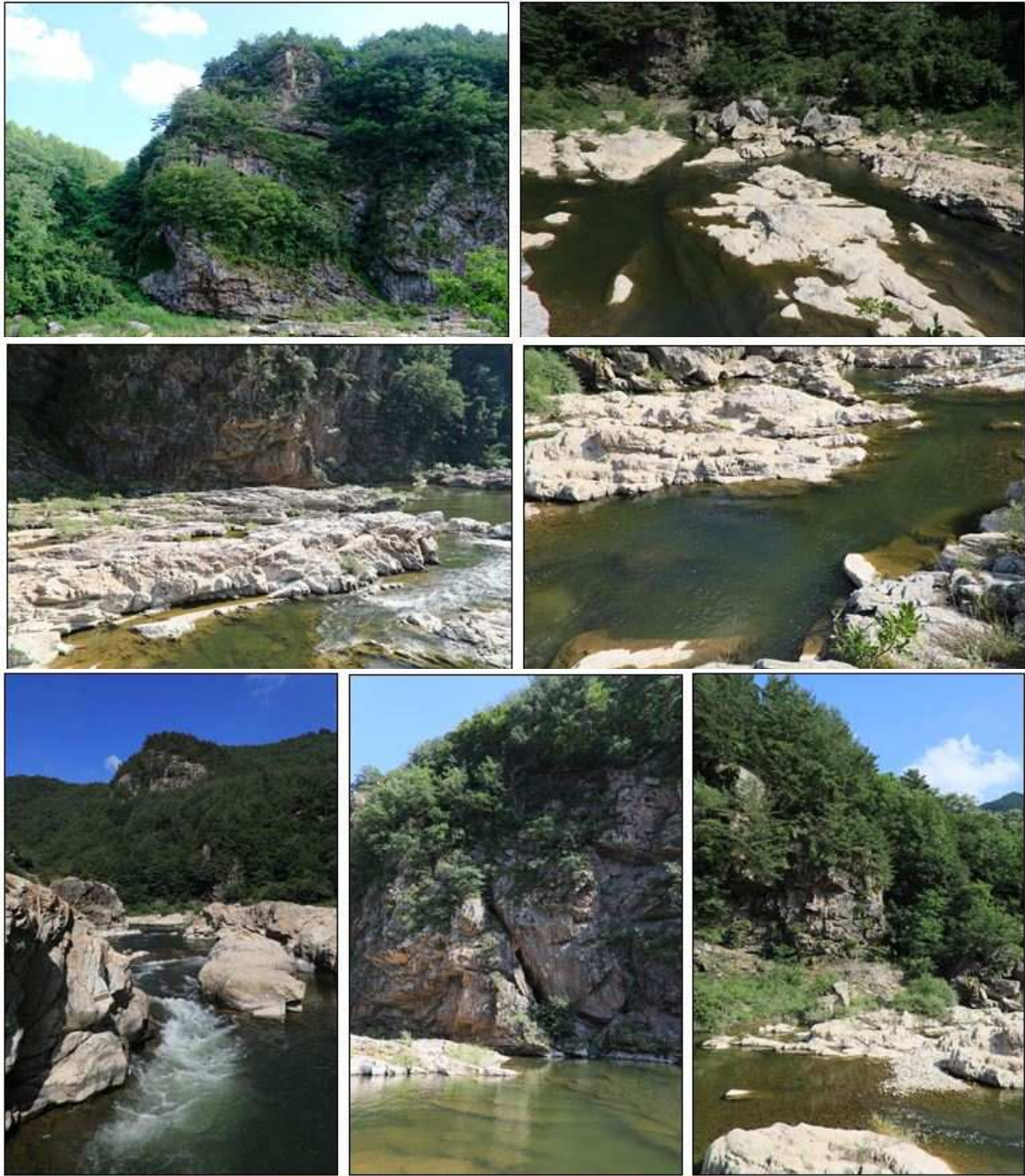
- 9미(九美)

1. 어랑(魚梁): 폭포에 물고기가 비상할 때 샷갓 통발을 놓아 잡는 곳
2. 전주(田疇): 밭두둑. (현재 도로 건너편)
3. 반서(般嶼): 정자 앞 물 건너 돌섬
4. 층대(層臺): 층층이 된 절벽
5. 석지(石池): 구미정사 뒤 작은 연못
6. 평암(平岩): 넓고 큰 바위
7. 정담(澄潭): 물 맑은 소(연못)의 아름다움
8. 취벽(翠壁): 석벽사이에 있는 쉼터
9. 열수(列岫): 암벽에 줄지어 있는 듯이 뚫려있는 바위구멍



<구미정사 건물(빨간원)과 9미 위치>





A	B	A: 전주	B: 석지	C: 취벽	D: 반서	E: 평암	F: 징담	G: 어량	H: 열수	I: 층대
C	D									
E	F									
G	H									

- 18경(十八景)

1. 어풍대(御風臺): 폭포 옆에 있는 바위
2. 승약연(承躍淵): 고기가 뛰어오르는 못
3. 미원도(迷源渡): 경치가 황홀하여 어디로 물을 건널지 모를 곳
4. 장란암(障欄岩): 물이 부딪치는 바위
5. 환성석(喚醒石): 술 깨게 하는 바위

6. 난가석(爛柯石): 불 피우는 자리
7. 음홍교(飲虹橋): 바위 위로 걸친 무지개(폭포 무지개)
8. 추잠기(抽潛磯): 물에 잠겼다 드러났다 하는 물가의 자갈
9. 초주천(招舟遷): 건너려고 배를 부르는 곳
10. 풍뇌탄(風雷灘): 폭포 소리가 우레같은 여울
11. 용운대(春雲碓): 방아로 찼을 듯한 폭포 물 거품
12. 피우벽(避雨壁): 비 피하는 바위 절벽
13. 혼돈석(混沌石): 물 나들이에 있는 돌
14. 수옥천(嗽玉泉): 마실 수 있는 돌 틈의 샘물
15. 피서애(避暑崖): 난간에서 더위를 피하는 곳(정자 암)
16. 공명사(筇鳴沙): 지팡이를 끌면 소리가 나는 모래.
17. 배음준(杯飲樽): 잔으로 술 마시는 동이
18. 장서굴(藏書窟): 서적을 보관하는 굴

※ 18경은 9미에서 1~3가지 씩 세분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관련 문헌은 확인되지 않고 있음(집에 있던 많은 고서가 1995년 도난 되어 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후손(중손) *** 증언)

- 구미정사의 본제 수고당(守孤堂)은 직선거리 2.2km의 정선군 임계면 봉산리 216번지에 있으며, 후손의 증언에 의하면 어린 시절에 하천을 건너 산길을 따라 2~3시간 걸려 구미정사까지 음식을 옮겼다함 현재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88호 '정선 이종후가옥'으로 지정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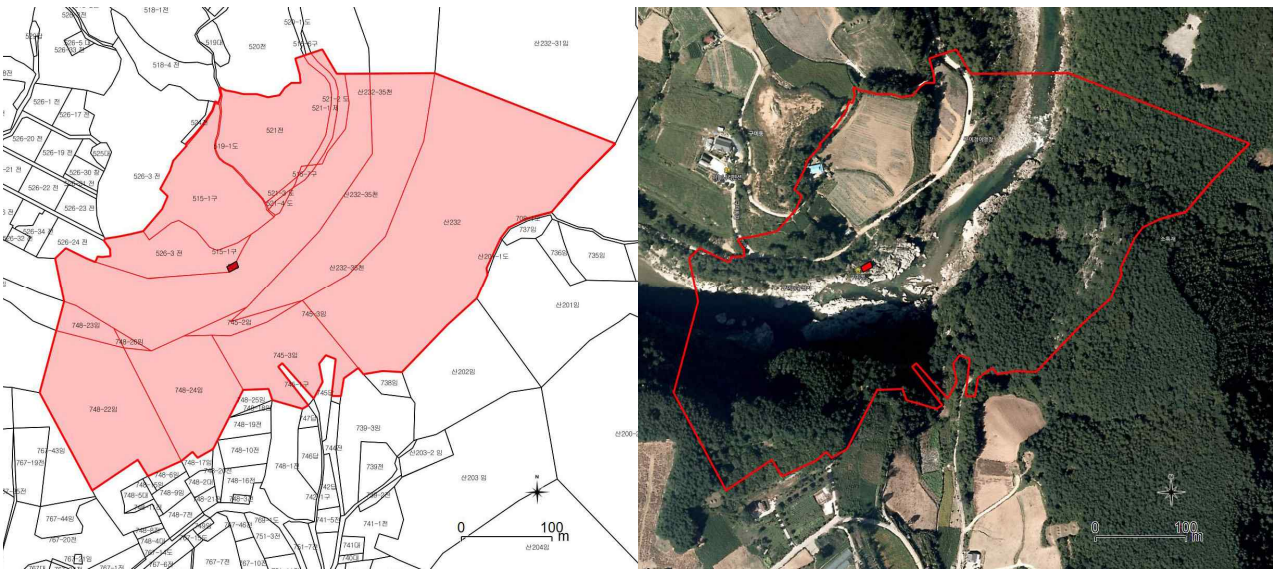
<구미정사의 본제 수고당 모습>

(3)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가치

- 정선 구미정사는 수고당(守孤堂) 이자(李蓺)의 별서로, 난세를 피하여 은둔처로 삼은 유래가 잘 남아 있으며, 본제 또한 보존되어 있음
- 골지천의 바위와 암반에서 발견한 9美 18景의 의미와 아름다움이 잘 보존되어 있는 등 계류별서의 특징이 잘 남아있음
- 수려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적인 면에서 명승으로서의 지정가치가 높음

(4) 지정 대상 및 범위

-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봉산리 515-1 등 20필지 157,183.71㎡



마. 검토의견(*****)

- 별서가 조성된 유래 등이 잘 남아있으며, 특히 골지천의 바위·암반과 어우러진 9美 18景과 같이 계류별서 특징이 잘 나타나 있음. 수려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적 의미가 더해져 지정가치가 높으나 경관요소의 정확한 위치와 의미 등에 대한 연구가 추가될 필요가 있음.

바. 참고자료 (서면검토·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9.6.18.)

(1) 종별 및 명칭(안) 검토

- 종별 : 명승
- 명칭(안) : 정선 구미정사

(2) 문화재 현황

-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정선 구미정사와 골지천 일원은 층리와 절리의 발달과 유수의 침식작용에 의한 수직절벽과 평탄한 하상(河床), 여울, 소(沼) 등의 하식지형이 발달하여 자연경관이 우수하며, 주변에는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88호로 지정된 정선 수고당 고택, 강원도 기념물 제70호 송계리 산성 및 고분군이 위치하고 있음.

○ 연혁·유래 및 특징

- 구미정사는 조선 숙종 때 공조참의를 지낸 수고당(守孤堂) 이자(李蓺, 1652~1737)가 조영한 별서로 추정되며, 정자에서 바라보는 하천의 기암 계류와 맞은 편에 석벽이 매우 아름다운 비경을 지니고 있으며, 후면부에는 자연 석지(石池)가 위치하고 있음. 건축물의 경우 전체 3칸 중 2칸에 걸쳐 온돌바닥의 방이 있었으나, 지금은 골조만 남아있음.

(3)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가치

- 정선 구미정사 일원은 남한강 상류인 골지천(임계천)이 감입곡류(嵌入曲流) 하면서 침식작용을 일으켜 하식지형이 발달 및 시각적 개방성이 우수하며, ‘저명한 경관의 전망지점’이라는 시점장·대상장으로서의 명소성, 정체성 등을 확보하고 있으나, 향후 문헌조사를 통해 조영의도, 장소성(예:9美,18景) 등의 인문학적 가치구명이 추가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9.6.18.)

(1) 종별 및 명칭(안) 검토

- 종별 : 명승
- 명칭(안) : 정선 구미정사와 골지천

(2) 문화재 현황

○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구미정사는 감입곡류지형으로 주변의 절벽노두, 하천(골지천), 하천바닥, 마르 밭 등의 환경과 어우러져 뛰어난 경관을 보임.
- 구미정사에서 하천 건너 절벽 꼭대기에는 이를 조망할 수 있는 조망점(임계면 낙천리 사을기 마을에 위치한 산)이 있음.

○ 연혁·유래 및 특징

- 구미와 십팔경의 명칭과 의미에 관한 근거가 부족함.
- 십팔경의 전래 과정 중 후대 침식 여부에 관한 고증이 필요함.
- 이는 장소의 진정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됨.
- 정사의 위치에 관한 고증이 필요하며, 출처가 분명하여야 함.
- 인터넷 자료를 검증 없이 인용하는 것은 가치 평가에 있어 문제가 됨.

○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현재의 감입곡류지형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향후 유량과 지형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구미정사 주변이 초화류 위주로 되어 있어 고문헌에 나타난 수목 등에 관한 조사가 필요함.

(3)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가치

- 구미 정사는 지정가치의 기준이 되는 구미와 십팔경에 관한 근거가 불분명하며 정사의 위치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보장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후손들이 보유하고 있는 고서 등 기록에 대한 객관적 분석, 검토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 문화재전문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9.6.18.)

(1) 종별 및 명칭(안) 검토

- 종별 : 명승
- 명칭(안) : 정선 구미정사 일원

(2) 문화재 현황

-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감입곡류지형으로 주변의 지질지모와 조화를 이루며 비교적 우수한 경관 자원을 지니고 있음.
- 연혁·유래 및 특징
 - 구미와 십팔경의 명칭과 의미에 관한 근거가 부족함.
 - 십팔경의 전래 과정 중 후대 첨삭 여부에 관한 고증이 필요함. 이는 장소의 진정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됨.
 - 정사의 위치에 관한 고증이 필요하며, 출처가 분명하여야 함.
 - 인터넷에 근거한 자료를 검증 없이 인용하는 것은 가치 평가에 있어 문제가 됨.
-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현재의 감입곡류지형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향후 유량과 지형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구미정사 주변이 초화류 위주로 되어 있어 고문헌에 나타난 수목 등에 관한 조사가 필요함.

(3)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가치

- 본 지정조사인 구미 정사는 지정가치의 기준이 되는 구미와 십팔경에 관한 근거가 불분명하며 정사의 위치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보장되어야 함.

(*** 의견 / 2019.6.10.)

- 정선 구미정사는 조선숙종 때 공조참의를 역임한 수고당 이자 선생이 학문을 갈고닦기 위해 건립한 건축물로 기호학파의 성리학에 기반한 정사

건축의 전통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골지천변의 빼어난 자연경관은 전통 별서정원으로서 구미정사의 위상도 잘 보여주고 있음. ‘아홉 가지 경관이 아름답다’하여 이름이 붙여진 것도 이러한 구미정사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음.

- 또한 구미정사가 위치한 지역은 남한강 상류인 골지천(임계천)이 감입곡류하면서 침식작용을 일으켜 만든 하식절벽과 평탄한 하상, 여울, 소 등의 하식지형이 발달하여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빼어난 경관을 보여주는 명승지이자 예로부터 해악집 등 고문헌에 언급될 만큼 역사·문화적으로도 의미를 갖는 경승지임.
- 이렇듯 구미정사는 하천 변의 바위에 지은 정사건축물이면서, 골지천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품은 전통 별서정원으로서 정사에서 바라보는 하천의 기암계류와 맞은편에 우뚝 솟은 석벽의 아름다운 비경, 다수의 문헌이 전하는 역사문화경관으로서의 가치 등은 구미정사가 국가지정 명승 자원으로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바, 정선 구미정사와 골지천을 명승으로 지정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람.

(*** 의견 / 2019.6.10.)

- 구미정사는 지금까지 구미정이라는 와전된 명칭으로 인해 강원도에 희귀한 정사건축으로서의 합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학술연구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었으므로 앞으로 이 방면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임.
- 기호학과의 성리학에 기반한 정사건축 전통을 이어받은 건축물과 이에 더한 골지천변의 빼어난 자연경관은 전통 별서정원으로서 구미정사의 위상을 드러내므로 전통 정원 연구의 귀중한 자료임.
- 구미정사와 골지천의 경관적 아름다움은 매우 뛰어나 과거부터 이를 읊은 시문이 다수 전해지고 있음.

사. 참고사항

(1) 조사용역 보고서 관계전문가 의견

(*** 강원대학교 명예교수(임학조경) / 2018.9.19.)

- 구미정은 조선 숙종 때 문신인 이자(李薺)와 관련된 정자로 주변 환경은 정자 전면으로 전개된 암반 절벽과 골지천, 그리고, 골지천 내에 특이한 형상으로 펼쳐진 암석군과 하천 건너편의 석벽을 마주하는 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 특히 하천 내에 위치한 암석에는 당호에서 볼 수 있는 9가지 아름다움이 구체적으로 분포하고 있고 관련 시문도 전하고 있음.

- 구미정 정자가 갖고 있는 정자-하천-하천석이 형성하는 경관구조는 조선조 유학자들이 즐겨 선택한 경승지의 조건이기도 함.
- 구미정은 배후부에 자연 석지가 위치하고, 전통적인 택지 원리인 배산임수(현재는 도로로 인해 배산의 의미가 약화됨)가 적용된 전형적 원림공간임.
- 현재는 개발되지 않은 전형적인 농촌 경관을 보이는 주변의 토지이용 조건과 더불어 훼손되지 않은 자연 경관을 유지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구미정과 골지천을 포함하는 공간은 명승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다 할 수 있음.

(* 청암문화재연구소장(지질학) / 2018.9.18.)**

- 정선 구미정사와 골지천 일대는 고생대 장산규암층이 분포하며, 층리와 절리의 발달과 유수의 침식작용에 의한 수직절벽과 평탄한 하상, 여울 그리고 소(沼) 등의 하식지형이 발달하며 자연경관이 매우 우수함.
- 조선 숙종 때 문신인 이자(李蘥, 1652~1737)선생이 지은 것으로 주변의 9가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며, 정선 구미정을 중심으로 주변 경관은 계절에 따라 풍광을 달리하며 매우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주는 곳임.
- 정선 구미정사와 골지천은 자연경관이 매우 수려하고 예로부터 역사와 문화적으로 알려진 곳으로 명승으로서의 지정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됨.

(* 한경대학교 교수(조경사) / 2014.9.15.)**

- 구미정사는 정선군 임계면으로 흐르는 골지천변에 위치하고 있는 정사건축으로 조선 숙종 때 공조참의를 지낸 수고당 이자(李蘥)가 조영한 정자임. 구미(九美)라 함은 아홉 개의 경관요소를 의미하며, 어량(魚梁), 전주(田疇), 반서(盤嶼), 층대(層臺), 석지(石池), 평암(平岩), 정담(澄潭), 취벽(翠壁), 열수(列岫)임.
- 구미정사는 하천변의 바위에 지은 정자로, 정사에서 바라보는 하천의 기암 계류와 맞은편에 우뚝 솟은 석벽이 매우 아름다운 비경을 지니고 있으며, 구미정사의 후면으로는 계류와 자연암반이 만들어 놓은 연못(石池)이 형성되어 있고, 구미정사를 중심으로 한 다수의 한시가 전해지고 있어 문화경관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승임.
- 이자(李蘥)는 정선군 임계면 봉산리의 가옥(수고당)에 기거하며, 이곳에서 약 4km 떨어진 이곳에 정자를 경영했던 것으로, 구미정사는 하나의 별서로 추정됨. 자연경승으로서의 가치가 우수하고 역사문화경관으로서의 의미도 풍부한 구미정사는 국가지정 명승 후보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대상으로 판단됨.

- ※ 단, 구미정사의 별서로서의 의미, 조영자의 행장, 구미와 18경 등 경승요소의 인문학적 가치 등에 관해 추가로 규명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됨.

(*** 상지대학교 명예교수(지질학) / 2014.9.15.)

- 구미정사(九美精舍)(일명: 구미정; 九美亭) 일대는 매우 단단하여 풍화에 강한 규암층(고생대 장산규암층)이 분포되어 있으며, 이 규암층 지역을 남한강 상류인 골지천(임계천)이 감입곡류(嵌入曲流)하면서 침식작용을 일으켜 하식절벽, 평탄한 하상(河床), 여울, 소(沼) 등의 하식지형이 발달하여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임.
- 구미정은 조선 숙종 때 문신인 이자(1652~1737) 선생이 사색당과 싸움에 실망하여 관직을 사직하고 정선에 내려와 은거하던 중 지은 것으로, 한가로울 때는 구미정에 나와 한시를 읊으며 피서와 풍류를 즐겼다고 하는데, 구미정이란 이름은 이곳에 앉아 언덕 아래의 자연경관을 관망하면 9가지 풍치의 미(美) 즉, 구미(九美)를 볼 수 있다는 의미이며, 현판에는 9가지 풍치를 다시 세분한 구미정 18경이 적혀 있음.
- 따라서 구미정은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고문헌인 해악집 권1, 권3에도 구미정에 대해 언급되어 있으며, 예로부터 역사와 문화적으로 알려진 곳이므로 명승으로서의 지정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지도, 도로표지판, 백과사전 등 대부분의 각종 매체에서 ‘구미정사’ 보다는 ‘구미정’이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 정자의 현판에도 ‘구미정’이라 하였음으로 지정명칭은 ‘정선 구미정 일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2013. 7. 26. 문화재청 예규 제124호)에서 ‘정사(精舍)’는 ‘house’로, ‘정(亭)’은 ‘pavilion’으로 표기토록 되어 있어, ‘정선 구미정 일원’의 영문표기는 ‘Gumijeong Pavilion and Surroundings, Jeongseon’이 바람직함.

(2) 문화재 지정 신청 및 검토면적 조서

- 지정신청 면적조서(강원도) : 14필지, 71,846㎡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봉산리	515-1	구	41,351	18,626	국(건설부)
	519-1	도	3,243	212	국(건설부)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지정면적(㎡)	소유자
	521	전	11,926	11,769	***
	522	임	79	79	***
	523	전	9,911	9,911	***
	526-3	전	21,397	4,772	***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산232-35	하	79,373	5,807	국(건설부)
	745-1	구	397	397	국(건설부)
	745-2	임	1,457	1,457	정선군
	745-3	임	9,609	9,609	정선군
	748-22	임	15,783	796	***
	748-23	임	1,777	1,777	***
	748-24	임	10,617	6,324	***
	748-26	임	310	310	***
계	14필지		207,230	71,846	

○ 지정검토 면적조서(문화재청) : 총 20필지 / 157,183.71㎡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지정구역(㎡)	소유주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봉산리	515-7	구	201.00	201.00	국(건설부)
	515-8	구	49.00	49.00	국(건설부)
	515-1	구	41,351.00	24,219.58	국(건설부)
	519-1	도	3,243.00	334.80	국(건설부)
	521-2	도	1,265.00	1,265.00	정선군
	521-1	제	1,045.00	1,045.00	정선군
	521-3	도	259.53	259.53	정선군
	521-4	도	256.00	256.00	정선군
	521	전	11,926.00	11,926.00	***
	522	임	79.00	79.00	***
	523	전	8,209.00	8,209.00	***
	526-3	전	17,476.00	6,230.78	***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m²)	지정구역(m²)	소유주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745-3	임	9,609.70	9,609.70	정선군
	748-22	임	15,783.00	15,783.00	***
	748-24	임	10,617.00	10,617.00	***
	748-23	임	1,777.00	1,777.00	***
	745-2	임	1,457.10	1,457.10	정선군
	748-26	임	310.00	310.00	***
	산232	임	46,340.99	46,340.99	***
	산232-35	천	79,373.00	17,214.23	국(건설부)
계	20필지		250,627.32	157,183.71	

아. 의결사항

- 보류
 - 인문학적 사료검증 및 지형·지질학적 특성에 대한 자료보완 후 재검토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보류 10명

【보고사항】

안전번호 천기 2019-07-17

17.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가. 보고사항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신청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조치한 사항임(74건)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현상 변경 허가	천연기념물 제205-1호 저어새	○ 신청인 : *** ○ 신청목적 : 천연기념물 저어새 인공부화 및 증식연구 ○ 허가사항 : 도태된 알 수거 ○ 개체수 : 5개 이하 ○ 포획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매도 ○ 허가기간 : 2019.5.20.~2019.8.31.	<허가>
	천연기념물 제361호 노랑부리백로	○ 신청인 : *** ○ 신청목적 : 이동경로 연구 ○ 허가사항 : 노랑부리백로 포획, 가락지, 위치추적기 부착 ○ 개체수 : 4개체 ○ 포획장소 : 영광군 칠산도 갯이갈매기, 노랑부리백로, 저어새 번식지 일원 ○ 허가기간 : 2019.6.24.~2019.7.25.	<허가>
	천연기념물 제323-2호 붉은배새매	○ 신청인 : *** ○ 신청목적 : 철새에 의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의 전파 위험 평가 ○ 허가사항 : 붉은배새매의 포획, 시료채취 및 위치추적 장치 부착 후 방사 ○ 개체수 : 10개체 ○ 포획장소 : 전남 강진군 일대 ○ 허가기간 : 2019.7.01.~2019.7.31	<허가>
	천연기념물 제323-1호 참매	○ 신청인 : *** ○ 신청목적 : 전시용 박제 제작 ○ 허가사항 : 참매의 표본제작 ○ 개체수 : 1개체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 보관장소 : 대전광역시 동구 이사로 194번길 25 고려옹방 ○ 허가기간 : 2019.6.23.~2019.7.22.	
	천연기념물 제455호 꼬치동자개	○ 신청인 : *** ○ 신청목적 : 담수어류 꼬치동자개 증식·복원 연구 ○ 허가사항 : 꼬치동자개 포획 및 시료채취 ○ 개체수 : 20개체 미만 ○ 포획장소 : 경남 산청군 단성면 덕천강 일대 ○ 허가기간 : 2019.6.23.~2019.10.31.	<허가>
	천연기념물 217호 산양	○ 신청인 : *** ○ 신청목적 : 산양의 전시용 박제 제작 및 조각 ○ 허가사항 : 산양 골격표본 제작(두개골) 및 기타조각 ○ 개체수 : 1개체 ○ 포획장소 : 국립공원공단 중북원기술원 북부복원센터 ○ 허가기간 : 2019.6.27.~2019.9.26.	<허가>
	천연기념물 제218호 장수하늘소	○ 신청인 : *** ○ 신청목적 : 장수하늘소 복원 및 증식을 위한 학술연구 ○ 허가사항 : 장수하늘소 포획 및 사육 ○ 개체수 : 2개체 ○ 포획장소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일대 ○ 허가기간 : 2019.7.1.~2019.8.31.	<허가>
	천연기념물 제218호 장수하늘소	○ 신청인 : *** ○ 신청목적 : 장수하늘소 복원 및 증식을 위한 학술연구 ○ 허가사항 : 장수하늘소 포획 및 사육 ○ 개체수 : 2개체 ○ 포획장소 :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일대 ○ 허가기간 : 2019.7.1.~2019.8.31.	<허가>
	천연기념물 제217호 산양	○ 신청인 : *** ○ 신청목적 : 산양 등 2종의 유전자 분석 연구 및 전시용 박제 제작 ○ 허가사항 : 산양, 독수리 폐사체 시료채취 및 표본제작 ○ 개체수 : 2개체 ○ 보관장소 : 국립생물자원관 ○ 허가기간 : 2019.6.27.~2019.8.26.	<허가>
	천연기념물 제198호 따오기	○ 신청인 : *** ○ 신청목적 : 따오기 폐사체 조각 ○ 허가사항 : 폐사체 조각 ○ 개체수 : 1개체 ○ 허가기간 : 2019.6.27.~2019.7.10.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천연기념물 제324-2호 수리부엉이	○ 신청인 : *** ○ 신청목적 : 수리부엉이 전시 및 교육목적 사육 ○ 허가사항 : 수리부엉이 사육 ○ 개체수 : 2개체 ○ 사육장소 : 서울대공원 맹금사 ○ 허가기간 : 2019.6.27.~2024.6.26.	<허가>
	천연기념물 제361호 노랑부리백로	○ 신청인 : *** ○ 신청목적 : 노랑부리백로 이동경로 및 번식지 회귀율연구 ○ 허가사항 : 노랑부리백로 포획 후 가락지 부착, 방사 ○ 개체수 : 전체 50개체 이하 ○ 포획장소 :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황서도) 인천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백령도) ○ 허가기간 : 2019.6.28.~2019.7.31.	<허가>
	천연기념물 제243-1호 독수리 등 2종	○ 신청인 : *** ○ 신청목적 : 전시 및 교육목적 사육 ○ 허가사항 : 독수리, 수리부엉이 사육 ○ 개체수 : 2개체 ○ 사육장소 : 전주 동물원 내 맹금류 사육장 ○ 허가기간 : 2019.6.28.~2024.6.27.	<허가>
	천연기념물 제323-4호 새매	○ 신청인 : *** ○ 신청목적 : 새매 등 2종의 전시 및 교육 ○ 허가사항 : 새매, 황조롱이, 참매의 폐사체 박제 ○ 개체수 : 4개체 ○ 보관장소 : 국립생물자원관 ○ 허가기간 : 2019.6.28.~2019.7.28.	<허가>
	천연기념물 제324-4호 수리부엉이 등 2종	○ 신청인 : *** ○ 신청목적 : 전시 및 교육용 박제 제작 ○ 허가사항 : 솔부엉이, 소쩍새 표본제작 ○ 개체수 : 2개체 ○ 보관장소 :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홍보전시실 ○ 허가기간 : 2019.7.1.~2019.7.31.	<허가>
	천연기념물 제204호 팔색조	○ 신청인 : *** ○ 신청목적 : 전시용 박제 제작 ○ 허가사항 : 팔색조 폐사체 표본제작 ○ 개체수 : 1개체 ○ 보관장소 : 민속자연사박물관 ○ 허가기간 : 2019.7.1.~2019.9.30.	<허가>
	천연기념물	○ 신청인 : ***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제217호 산양	○ 신청목적 : 폐사체 매장 ○ 허가사항 : 산양 폐사체 매장 ○ 개체수 : 1개체 ○ 허가기간 : 2019.6.28.~2019.7.7.	
	천연기념물 제330호 수달	○ 신청인 : *** ○ 신청목적 : 폐사체 소각 ○ 허가사항 : 수달 폐사체 소각 ○ 개체수 : 1개체 ○ 허가기간 : 2019.7.2. ~2019.7.15.	<허가>
	천연기념물 제323-1호 참매	○ 신청인 : *** ○ 신청목적 : 전시 및 교육용 박제제작 ○ 허가사항 : 참매 폐사체 표본제작 ○ 개체수 : 1개체 ○ 보관장소 : 서대문자연사박물관 ○ 허가기간 : 2019.7.3.~2019.8.31.	<허가>
	천연기념물 제199호 황새	○ 신청인 : *** ○ 신청목적 : 자연번식 황새 유조 가락지 및 발신기 부착 ○ 허가사항 : 황새 유조 포획 후 혈액채취, 가락지, 위치 추적기 부착 ○ 개체수 : 6개체 ○ 포획장소 : 충남 예산군 광시면 장전리, 관음리, 대리 ○ 허가기간 : 2019.7.3.~2019.7.31.	<허가>
	천연기념물 제323-2호 붉은배새매	○ 신청인 : *** ○ 신청목적 : 철새에 의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의 전파 위험 평가 ○ 허가사항 : 붉은배새매 포획 및 시료채취, 위치추적기 부착, 방사 ○ 개체수 : 10개체 ○ 포획장소 : 전라남도 장흥군 일대 ○ 허가기간 : 2019.7.8.~2019.7.31.	<허가>
	천연기념물 제331호 점박이물범	○ 신청인 : *** ○ 신청목적 : 전시 및 교육용 박제제작 ○ 허가사항 : 점박이물범 표본제작 ○ 개체수 : 1개체 ○ 보관장소 : 천연기념물센터 ○ 허가기간 : 2019.7.9.~2019.8.31.	<허가>
	천연기념물 제205-1호	○ 신청인 : *** ○ 신청목적 : 저어새 증식을 위한 사육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저어새	○ 허가사항 : 저어새 사육 ○ 개체수 : 1개체(서울대공원 임대 개체) ○ 사육장소 :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저어새 번식장 및 사육장 ○ 허가기간 : 2019.7.9.~2024.7.8.	
	천연기념물 제199호 황새	○ 신청인 : *** ○ 신청목적 : 황새의 야생복귀 모니터링 및 텃새 개체 군 복원 ○ 허가사항 : 황새 혈액채취, 가락지, 위치추적기 부착 후 방사 ○ 개체수 : 3개체 ○ 방사장소 : 충남 예산군 대술면 궤곡리 단계적 방사장 ○ 허가기간 : 2019.7.16.~2019.7.31.	<허가>
	천연기념물 제324-2호 수리부엉이	○ 신청인 : *** ○ 신청목적 : 수리부엉이 치료후 방사 ○ 허가사항 : 수리부엉이 위치추적기 부착 ○ 개체수 : 1개체 ○ 포획장소 : 충남 예산군 일원 ○ 허가기간 : 2019.7.16.~2019.7.31.	<허가>
	천연기념물 제218호 장수하늘소	○ 신청인 : *** ○ 신청목적 : 장수하늘소의 야생방사 ○ 허가사항 : 장수하늘소 방사 ○ 개체수 : 3개체 ○ 방사장소 : 국립수목원(광릉숲) ○ 허가기간 : 2019.7.16.~2019.7.31.	
	천연기념물 제204호 팔색조 등 15종	○ 신청인 : *** ○ 신청목적 : 천연기념물 조류의 이동연구 ○ 허가사항 : 팔색조 등 15종의 포획 및 가락지 부착후 현지방사 ○ 개체수 : 15종 45개체(종별 3개체 이내) ○ 포획장소 : 전남 신안군 흑산면 일원 ○ 허가기간 : 2019.8.1.~2019.12.31.	<허가>
	천연기념물 제204호 팔색조 등 13종	○ 신청인 : *** ○ 신청목적 : 천연기념물 조류의 이동연구 ○ 허가사항 : 팔색조 등 13종의 포획 및 가락지부착 후 현지방사 ○ 개체수 : 13종 39개체(종별 3개체 이내) ○ 포획장소 : 충남 태안군 남면 일원 ○ 허가기간 : 2019.8.1.~2019.12.31.	<허가>
	천연기념물 제447호	○ 신청인 : *** ○ 신청목적 : 천연기념물 조류의 이동연구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두견이 등 12종	○ 허가사항 : 팔색조 등 12종의 포획 및 가락지부착 후 현지방사 ○ 개체수 : 12종 36개체(종별 3개체 이내) ○ 포획장소 : 경남 통영시 소매물도 일대 ○ 허가기간 : 2019.8.1.~2019.12.31.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수동배수문 배수로 정비사업 - 사업목적 : 2019년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배수로 수조제거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1023-1~강동동 3684-17(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서낙동강 일원 수동배수문 (20EA) 배수로 정비 ○ 허가기간 : 2019.7.1.~2019.10.31.	<허가>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낙동강 생태공원 샛강·수로 정비사업 - 사업목적 : 낙동강생태공원 내 유수단면 확보 등 수질개선도모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1200-1번지 일원 및 대저1동 1-31 일원(문화재구역 및 허용기준 제1구역) - 사업내용 · 1공구 : 다목적운동장일원 L=900m, A=6,953m² · 2공구 : 소광장일원 L=900m, A=8,252m² ○ 허가기간 : 2019.8.1.~2019.10.31.	<허가>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동·식물관련 시설(축사 신축) - 사업목적 : 농가소득 증대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봉림동 940-2(허용기준제5구역) - 사업내용 · 면적 : 534.40m², (축사 : 329.40m², 퇴비사 : 205.00m²) · 축사 : 9.0m×36.6m×7.3m, 퇴비사 : 8.2m×24.5m×7.3m · 사육마리수 : 50두, 분뇨배출량 : 400kg/일 · 분뇨처리방법 : 위탁(주)진성환경건설) ○ 허가기간 : 2019.7.4.~2019.10.31. ○ 허가조건 : 축사 신축 후 배출되는 분변이나 퇴비 및 우수시 오·폐수로 인한 주변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조건부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 담당부서의 승인을 받고 시행하기 바람.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부산에코델타시티 2단계 3공구 조성공사 지반조사 - 사업목적 : 부산에코델타시티 2단계 3공구 조성공사(지반설계) 지반조사 - 사업위치 : 부산 강서구 강동동 5501-7번지외 20(허용기준 5구역) - 사업내용 : 시추 21공(직경 87mm, 깊이 70~100m) · 부산 에코델타시티 2단계 3공구 부지조성 공사 지반조사 ○ 허가기간 : 2019.7.2.~2019.7.31.	<허가>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 사업목적 : 이동전화시설 광역화 서비스를 위한 공중전기 통신설비 설치 및 운영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658번지(허용기준 1구역) - 사업내용 : 높이 13.5m, 직경 400mm 전주 1본 ○ 허가기간 : 2019.7.10.~2019.8.9.	<허가>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신전항 물양장 설치 - 사업목적 : 신전항내 물양장 설치로 어업생산성 제고 및 어업경쟁력 강화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2033-14일원(문화재 구역 내) - 사업내용 · 물양장 : A=2,600㎡, B=32.0m, L=82.0m (직립제 안벽형식) · 준설, 기초굴착 체적 : 8,620㎥(기초굴착고 DL(-) 4.0m) · 매립면적 : 2,600㎡(매립계획고 DL(+) 3.2m) ○ 허가기간 : 2019.7.11.~2019.10.31. ○ 허가조건 - 준설 부유물이 서낙동강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2중 오탁방지 막을 설치 - 소음이 큰 장비의 운용 및 공사는 겨울철새가 도래하는 11월 부터 차년도 3월까지 금지 ※ 기 허가건으로 사업기간이 만료되어 재신청된 건임.	<조건부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생태조사 및 철새 먹이원 조사 - 사업위치 :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일원(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야생조류(청둥오리 등 오리류, 큰기러기 등 기러기류) 행동분석을 위한 포획 및 위치추적기 부착 ○ 허가기간 : 2019.7.16.~2020.3.12. ○ 허가조건 : 조사시기 및 방법, 절차 등에 대해 관계전문가 자문을 거쳐 추진하되 특히, 11월~3월은 겨울철새 도래기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관할 지자체 승인을 받고 추진하시기 바람.	<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 비상대피로 공사 - 사업목적 : 이동전화시설 광역화 서비스를 위한 공중전기통신설비 설치 및 운영 - 사업위치 : 부산 강서구 하단동 1149-5, 1150번지(허용기준 2구역) - 사업내용 · 주차장 추가 설치(면적 2,300.87㎡, 75대) · 장애인 비상대피로(L = 32.8m, H = 10.4m) · 국기계양대 설치(L = 5.0m, H = 7.4m) ○ 허가기간 : 2019.7.16.~2019.10.31.	<허가>
	천연기념물 제419호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어구창고 신축 - 사업목적 : 어유정향을 조업근거지로 하는 어업인의 어업활동 편리 도모 - 사업위치 :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1162, 1162-1(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어구보관창고 · 지상 1층(전면 폭 42.6m, 측면 폭 15.6m, 높이 8.8m), 대지면적 : 1,692.7㎡, 연면적 664.56㎡ ○ 허가기간 : 2019.11.1~2020.6.30. ○ 허가조건 - 사업지 주변은 저어새 번식 이후 7월~10월말까지 서식하는 지역으로 공사시기를 조정하여 허가함. - 창고 측면과 지붕의 채도는 낮은 색으로 조치하시기	<조건부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바라며, 수목을 식재하시기 바랍니다.	
	천연기념물 제419호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화장실 신축 - 사업목적 : 어유정향을 이용하는 어업인 및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 사업위치 :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1156(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남자, 여자화장실 각 1개소(장애인화장실 별도2실) · 지상 2층(전면 폭 13.5m, 측면 폭 4.5m, 높이 6.1m), 대지면적 : 1,246.20㎡, 연면적 60.06㎡ ○ 허가기간 : 2019.11.1.~2020.6.30. ○ 허가조건 - 사업지 주변은 저어새 번식 이후 7월~10월말까지 서식하는 지역으로 공사시기를 조정하여 허가함. - 화장실 건물의 색은 채도가 낮고 반사가 잘되지 않는 회색·밤색 계통으로 하고, 야간 조명은 적외선 감시 점멸등으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335호 통영 홍도 팽이갈매기 번식지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팽이갈매기 번식지 기후변화 영향 및 오염 모니터링 - 사업목적 : 기후 변화에 따른 도서생태계 영향 및 오염 모니터링 학술 연구 - 사업위치 : 통영 홍도 일원(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팽이갈매기 자력 포획 및 사체 수집 반출 · 팽이갈매기 30개체 포획(조류가락지 부착) 후 방사, 사체 50개체 반출 ○ 허가기간 : 2019.7.8.~2019.8.31. ○ 허가조건 - 제출된 연구계획서대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홍도 내 팽이갈매기가 집단 번식을 하고 있어 번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홍도 내 출입 시 통영시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시기 바라며, 통영시 관계 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실시할 것. - 허가기간 내 출입횟수는 2회로 제한하며, 출입인원은 1회당 5인 이내로 할 것. - 식물, 동물, 암석 포획·채취 등 허가사항 이외의 행위는 금지함. - 번식생태 변화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추후 문화재청에 제출할 것.	<조건부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천연기념물 제333호 제주 사수도 바닷새류(흑비둘기, 습새) 번식지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2019년 사수도 바닷새 번식지 오염 모니터링 - 사업목적 : 바닷새(습새) 번식생태 및 오염연구 - 사업위치 : 제주 사수도 일원(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습새 및 바닷새 사체 20개체 반출 ○ 허가기간 : 2019.7.15~2019.10.31. ○ 허가조건 : 바닷새류(습새)의 미세플라스틱 오염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추후 문화재청에 제출할 것.	<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101호 진도 고니류 도래지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 사업위치 : 전남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647 번지 외 7필지 (647, 647-1, 666, 668, 669-1, 674-2, 674-9, 692-3(허용기준 2구역)) - 사업내용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전체면적 13,641㎡(도로 206㎡ 포함)) · 임현식 등 7건(녹진리 647, 647-1, 666, 668, 669-1, 8,219㎡) · 정혜연 등 2건(녹진리 674-2, 3,951㎡) · 최형숙(녹진리 692-3, 1,265㎡) ○ 허가기간 : 2019.6.25~2020.6.30. ○ 허가조건 - 문화재 구역 주변에 미치는 영향(반사되는 빛 등) 저감방안(차폐나무 식재 등) 수립 후 해당지자체 - 소관부서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시기 바람. 허가기간 중 고니류 도래기간인 11월~익년 3월은 사업 중지하시기 바람.	<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101호 진도 고니류 도래지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 사업위치 : 전남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662외 3필지(662, 662-10, 652-3, 661-3)(허용기준 2구역) - 사업내용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 류한송 외 8건(전체면적 10,104㎡, 발전허가 용량 960kw) ○ 허가기간 : 2019.8.1.~2020.7.31. ○ 허가조건 - 문화재 구역 주변에 미치는 영향(빛 반사 등) 저감방안(차폐나무 식재 등) 마련 후 해당지자체 소관부서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시기 바람.	<조건부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 허가기간 중 고니류 도래기간인 11월~익년 3월은 사업 중지 하시기 바람.	
	천연기념물 제378호 제주 천제연 난대림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전시 및 문화센터 증축공사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색달동 2924-1, 2961-2, 3383-5(1구역/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3m) - 사업내용 : 전시 및 문화센터 증축 · 대지면적 5,820㎡ · 건축면적 : 934.415㎡ / (기존)338.225㎡+(증축)596.19㎡ · 연면적 : 1,485.09㎡ / (기존)473.42㎡+(증축)1,011.67㎡ · 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평지붕) · 최고높이 : 10.857m(옥탑층높이) ○ 허가기간 : 2019.7.1.~2021.7.31.	<허가>
	천연기념물 제212호 진도 관매도 후박나무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소나무제거 및 주변정비 - 사업위치 :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리 455-2(문화 재구역 내) - 사업내용 : 자연재해로 인한 도복 ○ 허가기간 : 2019.6.25.~2019.12.31.	<허가>
	천연기념물 제379호 제주 천지연 난대림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673-5(1구역/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5m) - 사업내용 · 바닥면적 93.25㎡, 높이 6.5m, ARM 시설 5.8m ○ 허가기간 : 2019.7.1.~2020.6.30.	<허가>
	천연기념물 제378호 제주 천제연 난대림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천제연 중계펌프장 하수관서 교체공사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232번 지 일원(문화재구역 및 1, 3구역) - 사업내용 · 하수관거 교체 L=790m · 하수관거 지름 Φ100mm -> Φ250mm · 사업면적 : 198㎡ / 터파기 B=1.4m, H1.3m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 허가기간 : 2019.7.1.~2020.6.30.	
	천연기념물 제423호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마라도천연보호구역 내 살레덕항 선양장 증설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580-1번지(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선양장 증설 8.0㎡(4.0*2.0*1.5m) · 방호벽 2개 제거(1.0*0.3*0.5m) ○ 허가조건 :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 오염물이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행 ○ 허가기간 : 2019.7.8.~2020.7.7.	<조건부허가>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동부휴게소 건축물 보수공사 - 사업위치 :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 90-4(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기존 노후기와 및 노후지붕트러스 교체 각278.08㎡ · 기존 목재창호 교체(창문 24개, 출입문 13개) ○ 허가기간 : 2019.7.8.~2020.12.31.	<허가>
	천연기념물 제480호 보성 전일리 팽나무 숲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회천 외래마을 노후교량 교체 - 위치 :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 전일리 917-9(1구역/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1m) - 사업내용 · 철거 : 콘크리트포장 20.46㎡, 전석 15.7㎡, 계단3단 1.2㎡, 교량 9.98㎡ · 시공 : 콘크리트포장 20㎡, 암거교 1개소(4.5*1.7*L5.0), 농로포장(T200) 129.6㎡, 잡석깔기(T200) 2.8㎡, 날개벽 4개소(L=3.0m), 조경석쌓기(H200~H900) 15.03ton ○ 허가기간 : 2019.7.10.~2020.3.31.	<허가>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이동통신 공용기지국 시설공사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호동 산1-2,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산183-6(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 왕관릉 3 : 폴2기, 장비패드 1기 등 설치(최고높이 3m) · 노루샘 2 : 기존 기지국 철거 및 신규 기지국 설치(최고높이 11.3m) 등 ○ 허가기간 : 2019.7.15.~2020.7.14.	
	천연기념물 제40호 완도 예송리 상록수림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농가주택 개축 - 사업위치 : 전남 완도군 보길면 예송리 279번지 1호 (1구역/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거리 6m) - 사업내용 : 농가주택 개축 · 대지면적 289㎡/ 철근콘크리트 구조, 평지붕 · 건축면적 102.76㎡, 건축높이 5.5m, 지상1층 · 건축물 3면 차폐식재 등 ○ 허가기간 : 2018.7.23.~2019.1.31.	<허가>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한라산 기도원 제2종근생(종교집회장-기도원)증축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호동 1628번지 (2구역/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285m) - 사업내용 · 대지면적 5,156㎡, · (당초) 건축면적 8개동 486.22㎡, 건물높이 6.5m · (증축) 건축면적 6개동 626.41㎡(철거 5개동 173.42㎡, 증축 3개동 313.61㎡ 포함) ○ 허가기간 : 2019.7.15.~2020.7.14.	<허가>
	천연기념물 제352호 보은 서원리 소나무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유전자 검사용 원본데이터 생성을 위한 시료채취 - 사업위치 :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서원리 49-4번지 (당해문화재) - 사업내용 : 솔잎 채취 10개 ○ 허가기간 : 2019.6.25.~2019.12.31.	<허가>
	천연기념물 제79호 강화 사기리 탕자나무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군도18호선(사기~동막)선형개량공사 -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사기리 63번지 일원 (1구역)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 사업내용 : 연장 및 폭원 : 연장 1.6km, 폭원 10m(왕복 2차선) 설계속도 : 40km/h 주요시설물 : 수로암거 3개소/42.5m ○ 허가기간 : 2019.6.25.~2020.6.24.	
	천연기념물 제551호 당진 면천 은행나무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당진 면천 은행나무 주변 발굴조사 - 사업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성상리 772-1번지 (1구역 외) - 사업내용 : 발굴면적 : 5,684㎡(객사지 4,984㎡, 남동치성 700㎡) 발굴 제한구역 : 천연기념물 제551호 당진 면천 은행나무 수관으로 부터 5m 이격 ○ 허가기간 : 2019.6.25.~2020.6.24.	<허가>
	천연기념물 제244호 소백산 주목군락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탐방로변 목재난간 설치 - 사업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산59-1번지 (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목재난간 35경간(경간당 1.5m, 50m) ○ 허가기간 : 2019.7.3.~2019.12.31.	<허가>
	천연기념물 제417호 태백 구문소 전기고생대지층 및 하식지형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아토피 치유정원 조성 - 사업위치 : 강원도 태백시 동점동 271번지 - 사업내용 : 아토피 치유정원 조성 · 사업면적 : 3,002㎡ · 사업내용 : 조경수 식재, 산책로 조성, 조경시설물 설치, 휴게공간 조성 ○ 허가기간 : 2019.7.2. ~ 2019.8.31.	<허가>
	천연기념물 제219호 영월 고씨굴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연장운영 - 사업위치 :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진별리 산262번지 1호 - 사업내용 · 기간 : 2019년 7월 27(토)-2019년 8월 17(토) · 연장운영시간 : 매일 18:00~20:00 ○ 허가조건 -관람객 안전사고 대비 철저	<조건부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연장 기간 동굴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동굴 훼손 점검 및 방지 -연장운영 계획에 따른 이행 철저	
	천연기념물 제195호 서귀포층 패류화석산지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활어보관시설 및 해수유입시설 설치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705번지 5호 번지선 - 사업내용 : 활어보관시설 및 해수유입시설 설치 · 활어보관시설 연면적 189㎡, 철근콘크리트 구조, 높이 4m · 활어수조: 3.0m*3.0m*1.3, 10ea / 펌프실 : 7.0m*3.0m*4.0m / 비품보관창고 : 2.0m*3.0m*4.0m · 해수유입관로 : 85m(육상 12m,, 해상 73m) ○ 허가기간 : 2019.7.27.~2019.11.30. ○ 허가조건 - 설치 구역 내 무태장어 서식 확인 시 가동 중지 및 보고 - 설치 예정 구조물(활어수조, 펌프실, 비품보관창고, 데크시설 등)의 외형과 색상 등이 이 지역 문화재(패류화석산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실시설계	<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98호 김녕굴 및 만장굴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숲가꾸기 - 사업위치 :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481번지 2호 - 사업내용 : 나무심기, 넝쿨제거, 풀베기, 가지치기, 솎아베기 · 나무심기 : 제선충작업로 양쪽에 1m내외 벗나무와 편백나무(약200주) 식재 · 솎아베기 : 흉고 6cm 이하 약 500주 · 작업방법 : 장비 사용 없이 인력 사용 ○ 허가기간 : 2019.7.18.~2029.8.30. ○ 허가조건 - 굴착은 장비 사용 없이 인력에 의한 굴착 실시 - 굴착 시 관계공무원 입회하여 현장 감독	<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444호 제주 선흘리 거문오름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이동통신 구조물중계기 설치 및 전기통신 선로 신설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478번지 3호 - 사업내용 : 구조물 강관주(1기), 전기통신 맨홀(7개), 전기통신관로(1,418m)d	<조건부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 허가기간 : 2019.7.18.~2019.11.30. ○ 허가조건 : 중계기 강관주 높이는 주위의 삼나무 숲과의 이질적 경관을 억제하기 위하여 통신기능 범위 내에서 최대한 낮추어 설치	
	천연기념물 제98호 제주 김녕굴 및 만장굴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부종휴 선생 만장굴길 조성사업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산41번지 3호 등 - 사업내용 : 이정표 및 지오사이트 조형물(표지석) 설치 · 규모 : 표지석(550mm*1,300mm), 이정표(48mm*1,300mm) ○ 허가기간 : 2019.7.17.~2019.8.31. ○ 허가조건 : 이정표 및 지오사이트 조형물은(신청시 개수 : 이정표 13개, 표지석 9개) 적정한 이격거리 및 지형 특성을 반영하여 과도하게 설치되지 않도록 개수를 조정하여 설치	<조건부 허가>
	명승 제3호 완도 정도리 구계등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다도해해상 구계등 야영장 조성 - 사업위치 : 완도군 완도읍 정도리 88(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야영장 조성(안내센터건물 포함) ○ 허가기간 : 2019.8.1.~2020.10.31.	<허가>
	명승 제63호 부여 구드래 일원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밤 홍보 전시천막 설치 - 사업위치 :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420(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몽골텐트(5*5m) 1동 설치 ○ 허가기간 : 2019.7.12.~2019.12.31.	<조건부 허가>
	명승 제12호 진안 마이산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관람로 보수정비 - 사업위치 : 진안군 마령면 마이산남로 367(구역 내) - 사업내용 : 관람로 포장교체(박석-> 황토콘크리트) ○ 허가기간 : 2019.7.12.~2019.12.31.	<조건부 허가>
	명승 제13호 부안 채석강 적벽강 일원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서해생명자원센터 친어동 정비 - 사업위치 : 부안군 변산면 죽막길 28(문화재구역 내)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 사업내용 : 친어동 배출수 수조 설치 ○ 허가기간 : 2019.7.12.~2019.12.31.	
	명승 제27호 양양 낙산사 의상대와 홍련암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의상대 보수 - 사업위치 : 양양군 강현면 낙산사로 100(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기둥 3개 교체, 청판'귀틀'개판 일부교체 ○ 허가기간 : 2019.7.3.~2019.12.31.	<허가>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부산에코델타시티 3단계 2공구 조성공사 지반조사 - 사업목적 : 지층상태 확인 및 단지개발 지반공학적 조사 - 사업위치 : 강서구 대저2동 5442-7, 5990-5(허용기준 24구역) - 사업내용 ○ 사업내용 - 당초 허가사항 : 시추 2공(직경 76mm, 깊이 70m) · 사업위치(강서구 대저2동 5442-7, 5990-5)(허용기준 24구역) - 변경 허가사항 : 시추 17공(직경 76mm, 깊이 70m) · 사업위치(강서구 대저2동 5442-2외 16개소)(허용기준 23,47역) ○ 허가기간 : 2019.6.10.~2019.8.31.	<허가>
허가 사항 변경 허가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신축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효동1(2구역/ 문화재외곽경계로부터 8m) - 사업내용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 · (당초) 건축(연)면적 178.58㎡, 건물높이 6.55(1층) 절토 89㎡, 성토 19.5㎡, 기존돌담보존 등 · (변경) 건축(연)면적 178.58㎡/355.58㎡, 건물높이 7.918m(2층), 절토 118.16㎡, 집수정 3 개소설치 등 ○ 불허사유 : 당초허가사항보다 건물 높이증가로 문화 재 인접지로서 주변 경관을 크게 해치게 될 것으로 판단 ○ 허가기간 : 2018.8.20.~2019.9.30. ※ 당초 허가서대로 시행	<불허>
	천연기념물 제182호	○ 신청인 : *** ○ 허가사항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 사업명 : 환승주차장 및 버스 회차지 조성공사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호동 1122-6번지 외 5필지(1구역/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15m) - 사업내용 1) (당초) · 전석쌓기 : L= 117.0m · 화장실(1개소) : 간이화장실(2.8*1.3*2.5) · 휴게시설(1개소) : 컨테이너(6.0*3.0*2.6) 2) (변경) · 전석쌓기 : 134.0m(증17m) · 화장실(1개소) : 조립식화장실(6.0*3.3*2.75) · 휴게시설(1개소) : 조립식 휴게시설(6.3*3.3*2.75) ○ 허가기간 · (당초) 2018.9.10.~2019.2.28. · (변경) 2018.9.10.~2019.12.31.	
	천연기념물 제112호 영광 불갑사 참식나무 자생북한지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전일암 석축정비 - 사업위치 : 전라남도 영광군 불갑면 산2-1일원(문화재 구역 내) - 사업내용 : 전일암 석축정비(변경없음) ○ 허가기간 - (당초)2017.7.5.~2019.7.4. - (변경)2017.7.5.~2021.7.4.	<허가>
	천연기념물 제112호 영광 불갑사 참식나무 자생북한지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향적당 개축 및 석축 정비 - 사업위치 : 전라남도 영광군 불갑면 산2-1일원(문화재 구역 내) - 사업내용 : 향적당 개축 및 석축정비(변경없음) ○ 허가기간 - (당초)2017.7.5.~2019.7.4. - (변경)2017.7.5.~2021.7.4.	<허가>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신흥사 운하당 개축공사 - 사업위치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170(문화재구역 내)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천연보호구역	- 사업내용 1) 당초 · 건축면적 315.6㎡(증77.3㎡), 겹처마, 막새마감/팔작지붕 · 정면6칸, 측면7칸 / 최고높이 7.12m 지상1층 2) 변경 · 건축면적 315.6㎡(증77.3㎡), 겹처마, 막새마감/팔작지붕 · 정면6칸, 측면7칸 / 최고높이 7.12m 지상1층 · 기둥고 2,850mm → 3,000mm(증150mm)	
		○ 허가기간 : 2019.3.25.~2020.3.24.(변경없음)	

나. 의결사항

- 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조건부 가결 1명, 접수 9명